

영국의 육아정책

| 문무경 편역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KICCE

육아정책개발센터

영국의 육아정책

| 문무경 편역

영국의 육아정책

| 문무경 편역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발간사

최근 들어 많은 국가들이 육아지원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인구 감소의 위기와 여성경제 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정책으로서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육아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함과 더불어 좀 더 효과적인 육아지원정책 대안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인적 자원의 육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며, 인생 초기 영유아기 성장과 발달에 대한 지원이 여타 시기의 지원보다 효과적 일뿐더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요 선진국에서의 실증적 연구 결과들 때문에도 영유아기 육아지원을 위한 세부 정책들을 마련하고 또한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연속 간행될 세계의 육아정책 동향은 각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근 육아정책의 주요 이슈와 동향을 소개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06년도에는 일본과 스웨덴의 육아정책을 소개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호주의 보육정책을 시작으로 여타 육아 선진국들의 육아지원정책 동향을 계속 소개할 예정입니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육아정책 정보들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세부 육아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데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ONTENTS

목차

영국의 육아정책 프로파일 • • 04

1

장

서론

1. 영국 육아정책의 발전 과정 • • 08
2. 여성의 노동참여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 • 11
3. 용어 정의 • • 13

2

장

영국의 육아정책 개관 및 동향

1. 행정 부처 • • 16
2. ECEC 서비스 유형 • • 18
3. 다양한 요구의 아동을 위한 육아정책 • • 21
4. 서비스 질 관리 • • 24
5. 육아지원인력 자격기준 및 훈련 • • 27
6. 재정 • • 31
7. 평가 및 연구 • • 34

3

장

영국의 육아지원 서비스 현황

1. 서비스 기관 현황 • • 38
2. 서비스 이용 아동 현황 • • 41

- 3. 육아지원인력 현황 • • 44
- 4. 비용 • • 55

4장

영국의 주요 육아정책과 연구

- 1. 아동을 위한 개혁방안 • • 59
(Every Child Matters)
- 2. 10개년 아동보육 전략 실행계획 • • 65
(Ten Year Childcare Action Plan)
- 3. 슈어스타트 아동센터와 지역 프로그램 • • 68
(Sure Start Children's Centre & Local Programme)
- 4. 연장제 학교 서비스 • • 75
- 5. 영유아기 기초단계 교육과정 • • 80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 6. 교육표준청(Ofsted)의 질 관리체계 • • 86
- 7. 가족 및 부모 지원 프로그램 • • 93
- 8. 정책연구: EPPE Project • • 100

5장

맺음말 • • 112

참고문헌

• • 116

영국의 육아정책 프로파일¹⁾

- 총 인구 : 60,2백만명
- 출산율 : 1.7 명
- GDP : USD 28,000
- 6세 미만의 아동 수 : 500만 명
- 여성 노동 참여율 : 15~64세 여성의 69.6%, 이 중 40.4%는 시간제 근무임. 남성의 시간제 근무 비율은 10.0%(OECD Employment Outlook, 2005).
- 6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노동참여율 : 2002년 기준 6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57%, 이 중 58%는 시간제 근무; 2003년 기준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49.2%
-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
 - 26주 유급 출산휴가, 첫 6주는 수입의 90% 받음, 나머지 기간은 일정금액 받음(2005년 4월부터 주당 106 파운드).
 - 26주 이상 근무한 어머니의 경우, 휴직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26주 무급휴직 할 수 있음.
 - 2003년, 아버지에게도 자녀출생 후 2주 동안의 유급 육아휴가제도가 도입됨.
 - 2010년까지 12개월 유급 출산휴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의무취학 연령 : 만5세
- 아동 빈곤율 : 세금 공제 후 15.4%, OECD 평균 11.2%(UNICEF, 2005)

1) OECD(2006), Starting Strong II Country Profile

이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나 1998/99년 아동 빈곤율 감소를 위하여 영국정부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25%나 감소된 비율임.

■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ISCED 수준 0) : GDP의 0.47%(0.45%는 공립, 0.02%는 사립). 이는 전체 교육투자의 8%에 해당함.

■ 아동 1인당 ECEC 비용: USD 8,452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5).

■ 부모부담 평균 육아비용 :

- 부모부담 비용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하나, 대략 45% 수준임.
- 저소득층 및 중산층 부모는 80%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사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다수 부모에 해당) 부모가 전체 비용을 부담함.

■ 무상서비스에 대한 법적 권리 :

- 만3세부터 취학연령인 만5세까지의 모든 아동이 무상으로 일주일에 12.5시간, 1년 33주 동안 유아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이 규정은 2010년까지 연간 38주, 20시간으로 확대될 예정임.
-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소외계층의 2세 아동을 위한 무상서비스 제공을 고려하고 있음.
- 또한 3~14세 아동을 위한 무상 방과후 보육시설(Out-of-School)을 아동 센터(Children's Centres)나 연장제 학교 프로그램(Extended School Programmes)과 연계할 계획임.

■ 주요 서비스 유형 :

- 유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주는 현재 3~4세 유아를 위한 교육 프로

그램을 주당 12.5시간 제공함. 시간은 반일제, 종일제 구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일부 지역은 1일 6시간 종일제 서비스를 제공함. 초등학교 내에 있는 예비 학급은 대부분 종일제이며, 일반적으로 일과를 연장하여 운영하지는 않음.
- 연장일과는 현재 많은 학교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아동에게 조식제공, 방과 전후 클럽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함.
- 유아학교/놀이집단은 2세 영아들을 위한 수시, 기간제, 종일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임.
- 아동 센터(Children's Center)는 부모와 아동을 위해 보육과 교육, 가족 지원, 건강 서비스, 고용 상담 등이 하나로 제공되어, 연중 “새벽부터 저녁까지(dawn to dusk)” 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기관(One stop Centre)으로 설계됨.
- 모든 형태의 기관은 현재 아동 센터나 연장학교로 전환되며, 지방정부는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ECEC 기관의 질적 수준 확보 및 보장에 책임을 져야 함. 즉, 이용할 수 있는 ECEC 서비스 기관이 없는 경우,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서비스 이용율 :

- 0~3세 아동의 약 20%가 교육표준청(Ofsted)에 등록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 3~4세 아동의 96%와 4~5세 아동 전체가 등록함.

■ 교사 자격 및 수급 :

- 주의 재정 지원을 받는 ECEC 기관에서는 3~4세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3~5세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함.

- 교사는 자격을 소지한 보육사(childminders)(3급)의 조력을 받음.
- 보육시설 종사자의 50%는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음. 약 20%는 대학 졸업 또는 3급 자격 소지자이나, 30%정도는 무자격임. 보육사의 16%는 3급 이하의 자격을 가지고 있음.

■ 교사 대 아동 비율 :

- 가정 보육시설 1:6
- 기관 보육시설 2세 미만은 1:3, 2세는 1:4, 3~7세는 1:8
- 유아학교 1:13
- 초등예비학급 2:30 (교사 1인과 3급 보조교사 1인)

서론

1. 영국 육아정책의 발전 과정

지난 20년 동안 영국에는 세계화와 경제 합리주의 정책의 결과로 부와 경제 분배의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인식이 팽배해 왔다. 특히 유아교육과 보육, 가족, 노동정책과 관련된 영국정부 정책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즉, 사회적 불평등은 교육, 사회, 경제, 보건과 복지에 걸쳐 통합된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유아기는 생애의 기초가 되는 발달과 성취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모든 아동은 공평하게 질 높은 유아교육과 보육(이하 ECEC로 표기함)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에서는 1997년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ECEC 서비스의 확대지원과 체제 개편이 단

행되었다. 영유아기 서비스 증진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여 사회적 소외집단 및 저소득가정의 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ECEC 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유아기 발전 협력체(Early Years Development Partnerships)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1998년에 국가수준의 아동보육전략의 시도와 더불어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체(Early Years Development and Childcare Partnerships: EYDCP)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급진적인 발전은 교육과 사회복지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던 ECEC 서비스가 1997년에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로 통합된 것을 계기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교육고용부 산하의 아동국(Minister for Children)이 ECEC 서비스를 총괄하게 되었다.

1998년 5월, 영국 정부는 0~14세까지의 아동과 16세까지의 장애아를 위한 국가수준의 아동보육전략(The National Childcare Strategy Green Paper: Meeting the Childcare Challenge)을 발표하고 보육시설 확충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 정부계획안에 의하여 1999년 1월에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Sure Start Local Programs)이 아동빈곤을 퇴치하고자 범부처간의 협력을 통하여 60개 극빈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외에도 같은 해에 교육과 보육뿐만 아니라 여타의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대안적 모델로서 조기 수월성센터(Early Excellence Centre) 설치하였다. 또한 1999년 8월 사회사업부에서 담당하고 있던 ECEC 기관 등록 업무를 교육고용부 산하의 교육표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으로 이관하였으며, 초중등

학교와 동일하게 장학사가 등록된 ECEC 기관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1994년에 4세 아동에게 제공되기 시작했던 무상교육(연간 33주, 주 5회, 1일 2시간 반씩)이 1999년 9월에는 3세 아동에게까지 확대 시행 되게 되었다.

아동학대로 인한 빅토리아 클림비에라는 어린이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03년에 영국정부는 아동을 위한 통합개혁안인 Every Child Matters를 발표하였다. 이 개혁안은 모든 아동이 성취해야 할 학습과 발달의 성과, 즉 공통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04년에 아동법(Children Act 2004)과 2006년 아동보육법(Childcare Act)을 개정하였다.

또한 2004년 12월에 교육기술부, 노동연금부, 재무부, 통산산업부에 의해 *아동보육 10개년 전략*(The Ten Year Childcare Strategy)을 발표하고 *'부모를 위한 선택, 아동을 위한 최상의 출발'*(Choice for Parents, the Best Start for Children)이라는 취지하에 그 목표를 설정하였다. 2006년 4월에 실행계획(Ten Year Childcare Action Plan)을 발표하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국 전역에 800개 이상의 슈어스타트 아동센터(Sure Start Children's Centre)를 설립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조기 수월성센터(Early Excellence Centre)는 정부의 보다 많은 재정지원과 더불어 2006년에 슈어스타트 아동센터로 전환하게 되었다.

한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2007년에 기초단계(Foundation Stage) 교육과정은 그 대상을 모든 5세미만 아동

으로 확대하는 Early Years Foundation Stage를 개발하였다.

또한 2007년 10월에 영국 정부는 0~19세 아동을 위한 개혁안인 *Children's Plan*을 발표하였다. 이 개혁안은 영국이 아동과 청소년이 성장하기에 최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며, 영 유아기 부문에 해당하는 다음의 주요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1) 2만 명의 빈곤소외지역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서비스 이용 기회 제공, 2) 특수아동을 위한 보다 많은 투자, 3) 개별적 지도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지원, 4) 학교와 부모의 연계 강화, 5) 교사의 전문성 제고 등이다.

2. 여성의 노동참여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가. 여성의 노동참여

2004년도 15~64세에 해당하는 영국여성의 노동참여율은 69.6%로, 이는 1990년의 67.3%에 비해 2.3%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여성노동참여율의 40.4%가 시간제로 근무하며, 이는 영국 남성의 시간제 근무율이 전체 남성노동참여율의 10%정도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OECD Employment Outlook, 2005). 영국은 유럽연합국가 중에서 네덜란드 다음으로 시간제 여성 취업률이 높다.

2002년, 6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영국 여성의 취업률은 57%이며, 이는 1990년 42%에 비하면 증가한 수치이다.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영국 여성의 취업률은 49.2%이다(OECD Babies and Bosses,

2005). 어린 자녀를 둔 영국여성들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제 근무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의 수가 많은 여성일수록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 취학 전 자녀를 둔 영국여성은 일주일에 평균 29시간 근무하며, 탄력근무시간제로 인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점차 용이해지고 있다.

나. 육아 휴직

2003년 이전까지 영국은 18주의 유급 육아휴직에 22주의 무급 육아휴직, 자녀가 만5세가 될 때까지 매년 4주간의 무급 휴직을 할 수 있었다.

영국정부는 2003년에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8주에서 26주로 확대 하였으며, 26주 이상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경우는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정 출산휴가 급여는 첫 6주 동안은 전체 급여의 90%를 받고, 나머지 20주는 주당 102.80 파운드(급여가 이보다 낮은 경우는 수입의 90%를 지급)의 기준을 따른다. 또한 2003년 이후 아버지도 아기가 태어난 지 56일 이내에 2주 동안의 유급 육아휴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99년 이후 영국에서 최소 1년 이상 고용되어 근무한 부모(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는 자녀가 만5세가 될 때까지 13주의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다(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경우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18주의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다).

영국정부는 2007년 4월에 9개월의 유급 출산휴가(아버지가 이용하는 육아휴직 포함)를 명문화하고, 또한 2010년까지 12개월의 유급 출산휴가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발표하여 향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3. 용어 정의

이 책에 나오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유아학교(Nursery School)**: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2세 이상 5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주로 반일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
- **유아학급(Nursery Class)**: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초등학교 내에 위치함. 3~4세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
- **초등예비학급(Reception Class)**: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초등학교 내에 위치함. 4~5세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 학기 중에 종일제(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로 운영됨.
- **유아학급과 초등예비학급이 있는 초등학교(Primary Schools with Reception and Nursery Classes)**: 일부 초등학교는 유아학급과 초등예비학급을 모두 제공하며, 연중 운영함.
- **유아학급없이 초등예비학급만 있는 초등학교(Primary Schools with Reception but No Nursery Classes)**: 일부 초등학교는 4~5세 아동을 모두 초등예비학급에 다닐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연중 운영됨.
- **종일제 보육시설(Full Daycare)**: 8세미만의 아동에게 하루에 연속적으로 4시간 또는 그 이상의 시간동안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 **기간제 보육시설(Sessional Daycare)**: 8세미만의 아동에게 특정

한 기간 동안(1일 4시간 이하, 주당 5회 이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 학교일과 전후 클럽 또는 방과후 클럽(Before/After School Club): 3세 이상의 아동에게 학교일과 전후로 다양한 활동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 놀이집단(Playgroup): 부모나 비영리단체, 또는 영리단체에 의해 운영되며 종일제, 기간제 등의 형태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 보육사(Childminder): 보육종사자의 가정에서 시간제 및 종일제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방 공립보육시설(Local Authority Day Nursery):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빈곤소외계층의 0~5세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 종일제 아동센터(Full-day Children's Centre): 0~5세 아동과 부모를 위한 포괄적, 통합적인 서비스를 종일제로 제공한다. 슈어스타트 아동센터의 84%를 차지함.
- 연장제 학교 서비스(Extended School Service):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정규일과 이외의 시간에 스포츠, 문화 등의 각종 활동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책임 관리자(Senior Manager): 국가자격기준에 의해, 3급 자격을 소지하고 2년의 보육시설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관리자급 종사자(Supervisory Staff): 국가자격기준에 의해, 종일제 보육시설 종사자는 모두 3급자격을 소지하여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3급 자격 취득 예정 시기와 취득방법에 대한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기간제 및 학교일과전후 보육시설 종사자는 모두 3급 자격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 종사자의 절반이 2급 자격을 소지하여야 함.

- 영유아기 전문가(Early Years Professional Status): 육아지원인력 전략(Children's Workforce Strategy)에 따라 2006년 2월에 새롭게 개발된 역할로 6급에 해당함. 2007년 1월 최초로 EYPS 자격이 부여됨.

영국의 육아정책 개관 및 동향

영국은 England, Northern Ireland, Scotland, Wales의 4개 지역으로 구성되며, 각 지역별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법적, 행정적인 책임을 분산시켜 ECEC의 특성이 다르다. 이 책은 가장 영국을 대표하는 England의 ECEC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한다.

1. 행정부처

영국 ECEC정책의 책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한다. 2007년 부터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CSF)가 ECEC 정책을 총괄하게 되었다. 아동학교가족부는 과거의 교육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DES)를 대신하여 세계경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사회의 기반인 아동과 청소년, 가족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려는 강력한 의지에서 개편, 출범하였다.

기존에 영국정부는 ECEC 정책을 명료히 하고 교육과 보육이 분리되는 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기술부내에 슈어스타트국(Sure Start Unit)을 두어 각종 아동 서비스와 교육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슈어스타트국은 아동과 가족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위임권한을 가지며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와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의 책임 하에 독립적인 부서로서 기능해 왔다. 이러한 슈어스타트국은 그대로 새로운 아동학교가족부에 남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모든 아동이 조기교육, 아동보호, 건강, 가족지원 등을 통해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정부 프로그램의 시행에 달려있다. 슈어스타트국과 지방정부는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한다(기존의 Early Year Development와 Child care Partnership은 이제 자문기구 역할을 함). 슈어스타트 전략은 아동이 출생함과 동시에 부모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건강, 유아기 학습, 부모역할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함을 목표로 한다.

2. ECEC 서비스 유형

1998년 이래로 영국의 ECEC 규정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사립 보육의 비율을 나타내는 영국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0~3세 미만 아동들은 보육사(Childminder), 놀이집단(Play group), 보육시설(Day nursery)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다. 1998년 아동조세감면(Child Care Tax Credit)이 도입되기 전까지 3세미만 아동들은 특수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나 극도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적인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아동은 3~4세부터 초등학교 내의 유아학교(Nursery school)나 놀이집단(Playgroup)에 다니고, 4세에는 초등학교의 예비학급(Reception class)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4세 아동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초등예비학급(대다수의 4세아동이 다님)이나 사립유아학교(Private nursery school)에 다닌다. 영국에서는 만 5세가 되면 아동은 의무적으로 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초등학교내의 예비학급(Reception class)이나 초등학교급(Primary class)에 다니게 되어 있다.

2004년 아동과 학습자를 위한 5개년 계획(Five Year Strategy for Children and Learners)에서는 교육과 보육이 분리되어 제공되는 문제와 ECEC 서비스를 통합하려는 사안 등을 포함한 정부 정책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방안에 의하면, 2010년까지 모든

3~4세 영유아들은 1년에 38주 동안(2006년에는 33주였음), 1주일에 20시간(2006년에는 1주일에 15시간이었음)을 무상으로 교육받게 된다. 또한 장기적인 목표로 1주일에 20시간 무상으로 양질의 방과후 보육(Out-of-School care)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부모들이 보다 ECEC 서비스를 융통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장제 학교 서비스 정책을 통해 부모는 자신과 자녀에게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ECEC 정책은 출생에서 6세까지의 유아기를 위한 질적 체제의 재검토 및 교육과 보육에 대한 통합적인 진단을 함께 하고 있다.

아동 연령에 따른 영국 ECEC 서비스의 주요 유형 및 그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0~만세 미만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보육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부족하다. 따라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들은 대부분 부모나 친척의 손에 양육되며, 이 시기 영아의 약 20% 정도만이 사립보육시설 또는 보육사(childminder)에 의해 공식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만세~3세 미만

만1세~3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ECEC는 대부분 보호 형태의 서비스이다. 놀이집단이나 일정 기간 동안 운영되는 기간제 보육시설

(Sessional care)에 다니는 1세 미만 아동은 없다. 만1~3세 연령 집단 영유아의 약 30%가 보육사에 의해 돌보아지거나 사립보육시설에 다닌다. 한편 2세 아동의 30%가 놀이집단이나 기간제 보육시설에 다니는데, 이 중 3분의 2는 교회나 기부단체가 운영하는 곳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개인이나 단체가 사립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사립유아학교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5~6개의 체인 형태로 합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만3~5세

1998년 9월 이후 무상 시간제 유아교육을 모든 만4세 아동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계획이 만3세 아동까지로 확대되면서 현재는 만3~4세 유아를 위한 무상교육이 보장되고 있다(1년 33주, 1주일 5일, 1일 2.5시간). 만3세 아동의 96%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54%는 사립 및 기부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을 이용한다(DfES, Sure Start Unit, 2005). 만4세 아동의 98%는 하루 최소 2.5시간씩 무상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다닌다. 서비스기관은 지방교육청에 의한 공립기관이 70%, 사립기관이 20%, 비영리단체가 9%정도이다. 지방교육청은 유아학교(Nursery school), 유아학급(Nursery class), 초예비학급(Reception class) 등의 교육기관을 지원한다.

라. 만5~6세

영국에서는 만5세에 의무교육이 시작된다. 모든 만5세 아동은 종일제(9:00~15:30까지 대략 6.5시간) 공사립 교육기관에 취학한다. 이외에도 학교일과 전·후 서비스(Out of School Services)가 개발, 이용

되고 있다. 국가 복권을 통한 새로운 기회재원(New Opportunities Funds)으로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창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유아를 교육·보육하는 기관의 수가 1997년 13,700개에서 2004년 490,000개로 증가하였다. 10개년 아동보육 전략(The ten year strategy)은 2010년이 될 때까지 3~14세의 모든 아동이 학교와의 연계 하에 학교일과 전후로 서비스기관(Out-of-Schoo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아침 8시에서 저녁 6시까지 연중 매일 운영되며 예술이나 스포츠를 포함하여 풍부한 활동과 함께 보육을 제공한다.

3. 다양한 요구의 아동을 위한 육아정책

1988/99년 이래 영국은 극한 위협에 처한 아동을 위한 서비스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영국정부는 위협에 처한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극빈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슈어스타트 프로그램(Sure Start Programme)을 투입하였다. 이러한 목표지향적인 접근은 모든 아동에게 혜택을 주되,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가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지향하는 ‘진보적 보편주의(progressive universalism)’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2020년까지 아동빈곤을 뿌리째 퇴치하려는 영국정부의 공약에 근거한다. 이 공약에 의하면, 1998년 3백4천만명이었던 절대 빈곤 아동수를 2010~11년까지 100만명 이하로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단기목표로 빈곤과 보호의 부재를 동시에 경험하는 아동의 수를 절반으로 감소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ECEC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즉 어떠한 배경을 가진 부모이든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고, 자녀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UNICEF(2005)에 의하면, 아동빈곤을 퇴치하고자 하는 영국의 이러한 목표는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가. 장애아동을 위한 육아정책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1993년 영국 교육법에는 학교에서 특수아동을 통합하도록 하는 조항이 만들어졌고, 2001년 특수교육과 장애법(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y Act)에서는 통합을 실천하기 위하여 정책 방안과 개정된 안내지침을 제시하게 되었다.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보육과 교육 현장의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 추가적인 학습과 사회적 요구를 가진 아동의 25%를 통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자치구도 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진전이 전혀 없는 학교와 교육당국도 있다(Ofsted, Special Needs and Disability towards Inclusive Schools, 2004). 최근 2차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특수학교(영국에는 1,000개 이상이 있음)의 통합과 유지를 지지하는 견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학교가 특별한 요구를 지닌 아동을 돌보는데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한다. 또한 부모들도 종종 학교가 너무 커서 특수한 요구를 가진 자녀들을 보호함에 있어서 공정치 못하거나 자녀들

이 괴롭힘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ECEC 기관에서 장애아동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기부단체 및 사립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공적인 재정지원이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아(장애아)를 받아들이는 일에 소극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립기관, 기부단체 등에서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아동들을 잘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영국정부는 심사숙고하여 재정지원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나. 저소득층 가정 아동을 위한 육아정책

영국은 2002~2003년 기준 저소득층 가정 아동(0~15세)의 비율이 21%였으며, 만5세 이하 아동의 약 22%가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2004). 최근 몇 년 동안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동빈곤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특히 한부모의 경우, 아동보육 비용의 70%를 지원해주는 것을 포함한 조세감면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보육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다. 소수 민족 및 이중 언어 사용 아동을 위한 육아정책

영국인구의 9%는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London, West Midlands 등의 지역은 약 15%가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음).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소수 민족의 자녀들이 교육성취도가 낮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영국에서는 인종 차별 및 편견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한층 강화되어 왔다.

4. 서비스 질 관리

가. 규제

교사자격제도는 8세 이하의 아동을 1일 2시간 이상 보육하는 서비스에 적용된다. 3~4세를 위한 취학 전 교육(Pre-primary education) 기관은 국가 자격과 교육과정 관리국(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QCA)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기관 또는 기부단체는 취학 전 교육에 요구되는 것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통합하는 위원회가 있으나, 자격과 재정지원에 대한 감사는 서비스 유형과 자체 규정(어떤 아동을 보육하는가, 어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등)에 따라 다르다.

가정보육을 포함하여 개별보육과 종일보육을 하는 탁아소(Creche), 일반보육시설(Day nursery) 및 방과후 보육시설은 2년마다 평가를 받는다. 재정지원을 받는 취학 전 기관은 4년마다(학교는 6년마다) 평가를 받는다. 2005년부터 학교를 포함하여 8세 이하의 아동을 교육·보육하는 모든 기관은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모든 평가는 교육표준청(Ofsted) 산하로 통합되어 있다.

나. 교사 대 아동 비율

가정보육의 경우, 최대 집단 크기는 6명이며(보조 교사를 포함한 경우는 12명), 6명 중에 5세 이하의 아동이 3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기관 중심의 공인된 놀이집단 및 방과후 보육시설에서는 최대 26명 아동까지

돌볼 수 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은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1:3, 2세의 경우는 1:4, 3~7세의 경우는 1:8을 준수하여야 한다. 유아학교나 초등예비학급의 경우, 최대 26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담임교사가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면서 교수활동을 겸한다면 1:10, 학급 담임 교사가 교수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3:13의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공립 ECEC 기관의 경우 최대 집단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대개는 교사 1인당 아동 26명을 넘지 않는다. 3~4세 아동을 위해서는 1:13의 비율을 지킨다.

다. 교육과정

2000년 이래로 취학 전 기관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의 발전이 계속되어 왔다. 2000년 9월부터 영국정부는 8세 이하 아동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위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기초 단계(Foundation Stage)를 도입하였고, 2001년에는 국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3세부터 핵심 단계(Key Stage) 1, 2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예비학급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초등예비학급은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교육을 받는 첫 단계임). 생애초기에 바람직한 학습 결과가 형성된다는 교육적 신념으로 자격과 교육과정 관리국(QCA)에서는 영유아기 학습목표(Early learning Goals)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관단체들과 함께 협력하여 기초단계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2000년 여름, 자격과 교육과정 관리국(QCA)은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조력을 구하여 영유아기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작성하였다. 영유아기 학습목표는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나, 취학 전 단계의 마지막 시기에 있는 5세 아동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학업성취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02년 후반, 0~3세 아동을 위한 교육과정 지도서(생후 첫 해를 지원하는 지침)가 소개되었으며, 이 연령의 아동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정보, 안내 지침 등의 내용이 수록되었다. 3~5세를 위한 기초단계 교육과정(Foundation Stage curriculum)은 2000년에 소개되어, 2002년에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첫 단계로 공식화되었다.

영유아기 기초단계(Early Years Foundation Stage: EYFS)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기초단계 자문가(Foundation Stage Advisor)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기초 단계(Foundation Stage)의 질적 향상과 교사가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교육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모든 교사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연간 4일씩 교육과정 개발프로젝트, 말하기와 의사소통 프로젝트(교사의 교수 실제 및 실천적 지식 향상을 위한 것), 아동에게 경청하기 훈련, 질적으로 우수한 실외 놀이 지원 및 개발 프로젝트, 기초단계(Foundation Stage)에서 핵심단계(Key Stage)로 전환하는 프로젝트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기초단계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은 지속적인 교사평가로 이루어지며, 이는 해당 연령 집단을 측정하는 공식적인 평가도구였던 기존의 출발점 평가(baseline assessment)를 대신한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영유아기 기초단계(EYFS) 자체는 계속 발전해가며, 곧 모든 연령 집단의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하나의 새로운 틀이 될 것이다.

라. 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

부모참여는 현재 영국의 ECEC 정책에 매우 주요한 요소이다.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은 부모 훈련과 발달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부모참여를 강조한다.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Sure Start Local Program: SSLP)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 협력의 50% 정도가 부모와 지역사회 구성원에 의한 것이므로 부모는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다. 또한 부모는 자신이 선호하는 ECEC 서비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최근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의 평가결과는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모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NESS Impact Study, 2005; Early Impacts of Sure Start Local Programmes on Children and Families, 2004). 영유아기 기초단계 교육과정(EYFS)의 등장은 아동 발달과 교육을 위하여 부모참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새로운 영유아기 기초단계 교육과정과 최근의 아동보육법(Childcare Act 2006)은 부모가 지역 서비스의 계획, 전개, 수행 및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차원을 넘어 강력히 '요구' 하고 있다.

5. 육아지원인력 자격기준 및 훈련

가. 자격 기준 및 양성

교사자격 수준과 유형은 근무하는 ECEC 서비스 형태와 기관에 따라 다르다. 8세 이하의 아동을 보육하면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개별지도 및 관리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국가기준은 3급(Professional diploma) 정도와 그 이상의 자격을 요구한다. 각 기관에서 종사자의 50% 정도가 최소한 2급 자격(아동 보호와 발달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보육사(Childminders) 자격은 지방정부가 승인한 양성훈련 기관에서 6개월 과정을 마치면 취득할 수 있다. 서비스 종사자들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의 경우, 자격기준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충족될 것인지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한 실행계획을 교육표준청(Ofsted) 감독관에게 제출해야만 한다.

모든 형태의 보육시설에서 교사자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은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기관장에게 책임을 부여하며, 교사 대 유아 비율을 완화하는 것 등이다.

나. 육아지원인력 수급

2002/2003년도 육아지원인력 조사(Childcare and Early Years Workforce Survey)에 의하면, 2001년 이래로 육아지원인력은 한층 질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州)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유아학교와 초등예비학급의 경우, 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우수한 교사 자격을 요구한다. 또한 학급에서 아동지도를 조력하는 보조교사의 경우 최소 3급정도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경우 종사자 자격은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50%는 3급 자격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20% 정도가 대학교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30% 정도는 무자

격이다. 보육교사의 16%는 3급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또한 놀이집 단이나 보육시설장의 80%가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보육시설 전체 노동력의 98%가 여성이다. 전일제 또는 시간제 근무 여부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양하며, 전일제와 시간제 근무자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내 유아학급 및 초등예비학급은 6.6:3.3, 초등예비학급은 5:5, 유아학교는 6.3:2.7, 종일제 보육시설은 8:2, 놀이그룹은 1:9, 휴일클럽은 6.5:3.5, 방과후 클럽은 2.3:7.7이다.

다. 근무여건

교사의 법적 근무시간, 교사 발달의 최소 수준, 연간 현직교육에 대한 규정은 중앙 정부에 대한 보고 사항이 아니며,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동학교가족부는 육아지원인력을 위한 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동 서비스를 위한 임금 및 노동력 전략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다. 즉 임금, 성과급, 임금의 상대적 격차 등을 검토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아동을 돌보는 일이 더 매력적인 직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 전략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요 이슈들은 보다 유연한 경력인정 및 양성 경로의 개발, 그리고 공통핵심 기술과 지식 개발, 아동 청소년 및 가족관련 전문인력위원회 설치 등이다. 여기서 공통핵심(Common Core)교과는 다른 기관이나 다른 직업에서도 아동, 청소년 및 가족과 함께 일해야 하는 교사에게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의 기초를 제공하며, 주요 이슈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전문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능력을 함양할 것이다. 또한 공통핵심교과는 국가 직업 기준을 수정하는 보다 기술적인 단계로 나아가

며, 교사자격기준을 높이고 특히 모든 ECEC 기관에 있어서 교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틀을 제공할 것이다.

라.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 제고

영국 정부는 육아지원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하였는데, 그 개혁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종일제 보육시설에서는 대학졸업자격을 획득한 영유아기 전문가(Early Year Professional Status)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대학졸업 지도자 기금(the Graduate Leader Fund) 장려방안을 도입하여 모든 종일제 보육시설이 2015년까지 대학졸업자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며, 소외빈곤지역에는 시설당 2명의 대학졸업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둘째, 지역의 육아지원인력 개발 전략을 지원한다.

셋째, 육아지원인력의 자격과 지위를 향상시킨다. 보다 많은 육아지원인력의 자격 향상을 위한 연수를 계획하고 단일한 자격체계를 마련하여 기존의 인력들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EYPS의 역할이 강화될 예정이며 가정보육을 기관보육으로 상당수 통합할 계획이다.

넷째, 보육사와 다른 가정보육사들에게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3급 이상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하고,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육아지원인력의 일환으로 개발시키도록 한다.

2005년 3월 31일에 법적 지위가 부여된 잉글랜드의 육아지원인력 개

발회의(The Children's Workforce Development Council for England: CWDC)는 육아지원인력에 관한 자문기관으로서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며, 훈련 및 전문성 교육기관(the Training and Development Agency)과 밀접히 협력한다. 그러므로 육아지원인력개발회의는 육아지원인력의 공급을 증대시킬 것이다.

6. 재정

취학 전 기관에 드는 사회적 비용은 GDP의 0.47%이며, 이 중 약 95.8%는 공적재원으로부터, 나머지 4.2%는 사립재원으로부터 충당된다(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5). 전체 교육기관에 투자되는 총 비용의 8.0%가 취학 전 기관에 제공되는 반면, 7%의 아동이 취학 전 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다. 3~6세 아동을 위한 ECEC 서비스에 드는 아동 1인당 비용은 USD 8,45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2002~2003년 DfEC, 국내 세입 및 다른 자료들에 기초한 국가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수치에 의하면, ECEC의 주된 재원은 가정 45%, 유아학교 교육(nursery education) 38%, 슈어스타트 10%, 아동보육 조세 감면 5%, 고용주 2%로 구성된다. 여기서 가정과 고용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적 재원이다. 2002~2003년 전체 6.685억 파운드 투자에 기초하여 정부는 같은 해에 3.6억 파운드를 지원하였다. 2004~05년에는 3.8억 파운드에 이르렀으며, 2007~08년까지 4.4억 파

운드로 증가시켜야 한다. 이는 1996/97년 1.1억 파운드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기존의 DfES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증가는 영국이 ECEC 서비스와 규정, 그중에서도 특히 정책과 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1998/99년에서 2004/05년, 이 기간 동안 영국정부는 2008년까지 잠재적인 발전이 예상되는 아동과 가정을 위해 추가로 14억 파운드를 지원했다. 2004/05과 2007/08년 사이에 영유아기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2배로 확대되고, 실질적으로는 연간 23%의 성장이 예견된다.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공적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보육 시설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서비스 공급자는 초기 시작비용을 지원 받고,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정은 아동보육 근로세 감면법(Working Tax Credit Childcare Element, 이전의 아동보육 조세 감면법, Childcare Tax Credit)에 따라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이는 아동보육비용의 70%를 지원받는 것으로, 1명의 아동이 주당 135파운드, 2명 이상의 아동이 주당 200파운드까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다. 한 부모를 포함해서 최소한 주당 16시간 일하는 부모에게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2006년 4월에 보육비용의 80%에 해당하는 비용인 주당 최대 300파운드, 아동 1인당 175파운드로 증가). 공적 보조금은 영리 및 비영리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으며, 의무교육이전의 ECEC 서비스에는 비영리 공급자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서비스 공급자들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교육표준청(Ofsted)에 등록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며,

정부에서 규정한 교육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주를 지원하는 아동보육을 위하여 세금감면 및 국가보험 감면 등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들은 피고용인들의 자녀보육을 위해 별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실정이다.

공적 보조금의 대부분, 즉 슈어스타트 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아동기 금위원회(Children's Trusts)와 연관된다. 지방정부의 아동위원회는 지역의 ECEC 서비스를 계획하고 주관한다. 이 보조금은 새로운 보육 시설을 설치하거나, 현재 운영되는 보육시설을 개선하거나, 아동센터(Children's Centre) 및 아동센터에서 전환된 형태인 이웃 보육시설(Neighbourhood Nurseries)를 개발하고 지원하거나, 종사자 인력을 개발하거나, 유아학교(Nursery School)를 개발하는 등에 사용된다. 보조금은 6가지의 다른 주된 재원에 의해 조성되므로 서비스 계획과 실행을 위해 각 부처는 보다 협력적이어야 한다. 추가적인 지원은 지방정부를 통해서 가능하며, 필요한 가정을 돕거나 모든 3~4세 아동이 교육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공립 기관 이용기회는 간접적으로 부모가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을 받는 경우나 무상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정의 자녀에게 제공된다. 보육료는 대체적으로 시장경제에 의해 결정되며, 보조금이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관에서는 보육료 상한액을 적용하는 정책이 제안되었다. 영국에서 5세 아동을 위한 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지며, 3~4세 아동은

연간 33주, 주당 15시간씩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이 연령대 자녀를 둔 부모들이 기부단체 또는 사립보육시설 및 유아학교 등에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유형, 소득에 따라 보육 비용은 다양하다. 부모들이 평균적으로 자녀보육에 지불하는 비용은 전체 보육료의 45% 정도로 추정된다. 저소득, 혹은 중산층의 부모들은 80% 정도를 지원받으며, 사립보육시설이나 사립유아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는 부모가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도 한다.

7. 평가 및 연구

1998년 이후 영국에서는 ECEC 서비스의 확대에 인하여 공격적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 및 평가가 강화되고 있다.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한 정책 수립을 강조하면서 ECEC의 국가 수준 수행 목표가 수립되고 성과 평가지표가 개발되었다. 관리 감독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앙 자료수집체제가 사용되어 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발전을 일관성있게 파악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관할지역에 있는 ECEC 기관의 질에 대해 책무성을 갖도록 하며, 교육 표준청(Ofsted)는 보육시설과 교육 기관 모두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슈어스타트국은 육아정책 개발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프로그램 평가(1년 예산규모: 6백만 파운드 / USD 10,748,400)를 시행한다. 슈어

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한 중단 연구가 영아기부터 아동기까지 발달 단계에 따라 수행되어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단기, 중기, 장기적인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이웃 보육(neighbourhood nursery)에 대한 대규모 평가 연구가 수행 중이다. ECEC 서비스의 질적 제고 과정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연구는 EPPE (Effective Provision of Pre-school Education) 프로젝트로, 취학 전 서비스가 초등학교 입학시점부터 11세까지 아동들의 성취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것이다. 질적으로 우수한 ECEC 서비스는 이후의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EPPE 연구결과는 영국 육아정책 수립과 실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영국의 육아지원 서비스 현황

영국 아동학교가족부(DCSF)는 2006년에 ECEC 기관 및 인력 등의 제반 현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서비스 유형에 따라 실태조사(2006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를 실시하였다. 즉, 다섯 유형의 보육시설(①종일제 보육시설[Full-day care], ② 기간제 보육시설[Sessional Day care], ③ 아동센터[Children's Centres], ④ 방과후 보육[Out-of-School Childcare], ⑤ 보육사[Childminders])와 세 유형의 유아교육기관, ⑥ 초등학교 내의 유아학교[Nursery School], ⑦ 초등학교 내의 유아학급과 초등 예비학급[Primary Schools with Reception and nursery classes], ⑧ 유아학급 없는 초등학교 내의[Primary Schools with Reception but no Nursery Classes])에 대해 조사하였다.²⁾

2) 이상의 서비스 유형에 대한 용어 정의는 서문 참조

이 실태조사는 3,322개의 종일제 보육시설, 1,172개의 기간제 보육 시설, 1,754개의 방과후 클럽, 723명의 보육사, 250개의 아동센터, 유아학급과 초등예비학급이 있는 초등학교 535개, 초등예비학급만 있는 초등학교 515개, 유아학교 188개를 대상으로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를 이용한 전화조사로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각 서비스 유형별로 실태보고서 총 8편과 총괄보고서(Overview Report)를 2007년 8월 발간하였다. 총괄 보고서는 서비스 유형별 실태조사를 종합하여 영국 ECEC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장 최근 현황인 2006년도 조사 결과를 2005년, 2003년, 2001년도의 조사 결과들과 비교하였으며, 국가수준의 평가를 위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 총괄보고서에 제시된 주요 현황을 요약·정리하고, 서비스 유형별 실태보고서를 부분적으로 참고하였다. 실태조사 분석 결과는 보육과 교육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되며, 주요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 기관 현황

- 설립유형, 운영시간 및 시수, 무상서비스 수혜 기간

■ 서비스 이용아동 현황

- 아동연령별 이용현황, 기관의 정원, 현원 대 정원 비율, 결원 등

■ 육아지원인력 현황

- 전체, 유급 및 무급 교직원 수, 시설유형에 따른 종사자 유형별 현황

■ 비용 및 수입

- 보육료 및 교육비, 부모부담 및 정부지원 비율, 수입 등

1. 서비스 기관 현황

2006년 기준으로 영국에는 총 110,343개의 육아지원기관이 있으며, 이 중 보육시설은 94,272개, 유아교육기관은 16,071개이다. 이는 종일제 보육, 기간제 보육, 방과후 클럽과 휴일 클럽, 보육사, 초등학교 내의 유아학교, 유아학급과 초등예비학급이 있는 초등학교, 유아학급은 없고 초등예비학급만 있는 초등학교를 포함한다.

종일제 보육시설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도에 12,694개가 되었으며, 이는 2003년에 비해 27%, 2005년에 비해 7%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기간제 보육시설 수는 2003년 이래 19% 감소하였다. 교육표준청(Ofsted)에 등록된 종일제 보육시설과 기간제 보육시설 수는 합하여 2003년에서 2006년까지 2% 증가하였다. 이는 상당수의 기간제 보육시설이 종일제 보육시설로 전환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아동센터(Children's Centre)는 823개가 운영 중이며, 이 중 종일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84%를 차지한다. 방과 후 보육시설은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방과후 클럽 수는 70% 증가, 휴일 클럽 수는 130%나 증가하였다. 이는 연장제 학교 프로그램(Extended School Programme)의 발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표준청(Ofsted)에 등록된 보육사는 71,500명이며, 2003년 이래 2% 감소하였다. 등록된 보육사 가운데 현재(2006년도 기준) 실제로

보육을 제공하고 있는 보육사는 57,855명(81%)이다.

〈표 1〉 유형별 보육시설 수

단위: 개(%)

유형	2006	2005	2003	2001	2003~2006 증감(%)	2005~2006 증감(%)
종일제 보육시설	12,694	11,811	9,964	7,800	27%	7%
종일제 아동센터	(823)	N/A	N/A	N/A	N/A	N/A
기간제 보육시설	9,681	9,966	11,892	14,000	-19%	-3%
소 계	22,375	21,777	21,865	21,800	2%	3%
방과후 클럽	7,656	N/A	4,534	4,900	70%	N/A
휴일 클럽	6,386	N/A	2,781	N/A	130%	N/A
보육사(현재 근무)	57,855	57,662	N/A	N/A	N/A	*
보육사(등록된)	71,500	70,200	72,900	72,300	-2%	2%
전 체	94,272	N/A	N/A	N/A	N/A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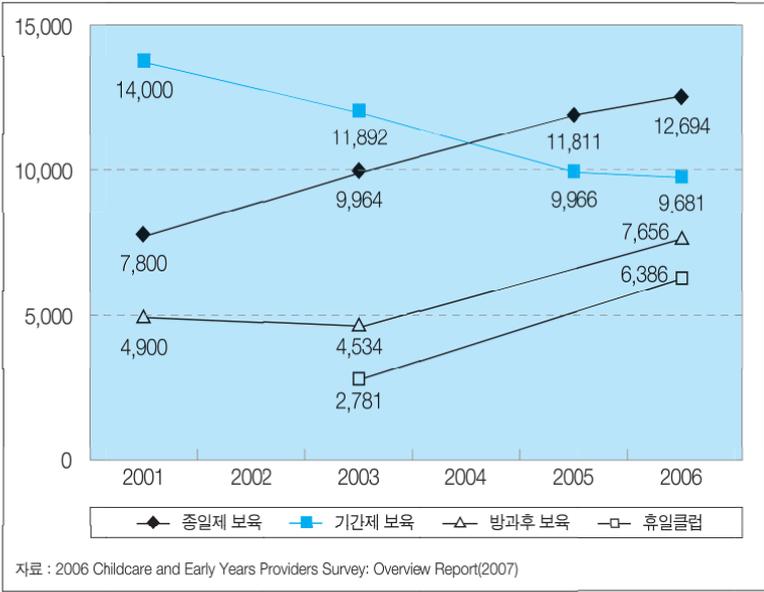
자료 : 2006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Overview Report(2007)

〈표 2〉 설립유형별 보육시설 현황(2006)

단위: %

	종일제 보육시설		종일제 아동센터	기간제		방과후 클럽	휴일 클럽	전체		
전체 시설수	12,694	11,811	823	9,681	9,966	7,656	6,386	36,417		
	2006	2005	증감	2006	2006	2005	증감	2006	2006	2006
사립	89%	79%	10	36%	96%	87%	9	77%	72%	79%
영리	65%	59%	6	17%	27%	30%	-3	33%	36%	44%
비영리	24%	20%	4	20%	68%	60%	8	44%	36%	42%
공립	10%	13%	-3	57%	5%	9%	-4	22%	25%	13%
지방정부	5%	9%	-4	50%	4%	7%	-3	11%	19%	9%
대학	5%	4%	1	8%	1%	2%	-1	11%	5%	5%
기타	2%	7%	-5	6%	*	3	-3	1%	4%	2%

자료 : 2006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Overview Report(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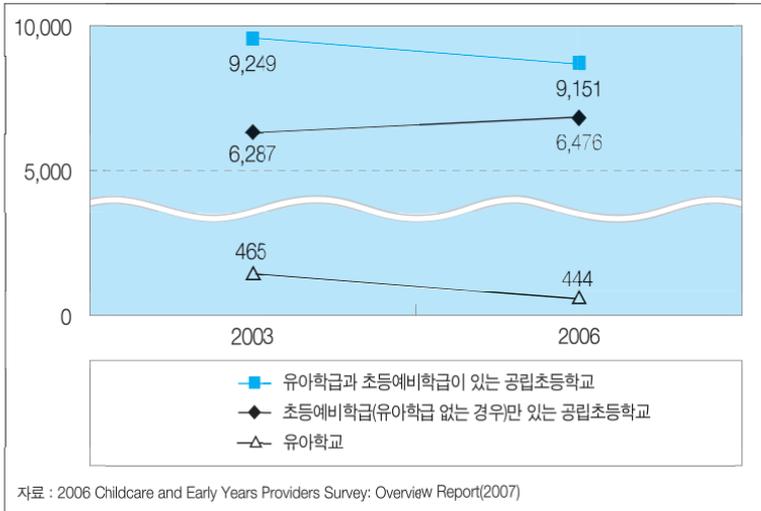
[그림 1] 보육시설 수 추이(2001~2006)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유아교육기관의 총 현황은 거의 변화가 없다. 2003년 16,001개 기관이 2006년도에는 16,071개의 기관으로 불과 70개의 기관이 증가하였다.

〈표 3〉 유아교육기관 수

유형	2006	2003	2003-2006 증감(%)
유아학교	444	465	-5%
유아학급과 초등예비학급이 있는 공립초등학교	6,476	6,287	+3%
유아학급없이 초등예비학급만 있는 공립초등학교	9,151	9,249	-1%
전체	16,071	16,001	+1%

자료 : 2006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Overview Report(2007)



[그림 2] 공립초등학교 내 유아교육기관 수 추이(2001~2006)

2. 서비스 이용 아동 현황

영국의 서비스 이용 총 아동 수는 한 개 이상의 기관을 중복하여 이용하거나 시간제로 이용하는 아동 등으로 인하여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실태조사보고서에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가. 보육시설 이용 아동 현황

종일제 보육시설, 방과후 클럽, 휴일클럽 이용 아동 비율은 각각 18%, 49%, 51% 증가하였다. 보육시설 수의 증가로 인하여 종일제 보육시설당 평균 이용 아동 수는 2003년 66명에서 2006년 61명으로 감소하였고, 방과후 클럽의 경우는 60명에서 53명, 휴일클럽은 84명에

서 57명으로 감소하였다.

보육사가 돌보는 총 아동 수는 267,900명이다. 보육사 1인당 돌보는 평균 아동 수는 2003년 4명에서 2006년 5명으로 증가하였다. 정확한 2003년도 자료가 없는 관계로 2006년도와의 증감 비교 현황을 제공하기 어렵다.

〈표 4〉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구분	종일제	아동센터 종일제	기간제	방과후 클럽	휴일 클럽	보육사
2006년도 총 이용 아동 수	766,900	40,050	389,700	404,800	352,500	267,900
2005년도 총 이용 아동 수	704,200	N/A	390,000	N/A	N/A	242,400
2003년도 총 이용 아동 수	649,400	N/A	469,900	271,900	233,800	287,100
이용아동수 증감 (2003~2006)	+18%	N/A	-17%	+49%	+51%	N/A
정원 증감 (2003~2006)	+26%	N/A	-14%	+58%	+117%	N/A
이용아동 수 증감 (2005~2006)	+9%	N/A	*	N/A	N/A	+11%
2006년도 시설당 평균 이용아동 수	61	66	40	53	57	5
2003년도 시설당 평균 이용아동 수	66	N/A	40	60	84	4
이용아동 수 대 정원 비율 (2006)	1.4	1.1	1.4	1.6	1.4	1.0

자료 : 2006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Overview Report(2007)

나. 유아교육기관 이용 아동 현황

2006년 공립학교의 유아학교에 다니는 아동 수는 총 36,100명이며,

이는 2003년에 비하여 1% 증가한 비율이다. 유아학교당 평균 이용 아동 수는 2003년 77명에서 2006년 82명으로 증가하였다.

유아학급 및 초등예비학급에 다니는 아동은 505,900명으로, 이는 2003년도에 비하여 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아학급이 없는 초등학교의 초등예비학급에 다니는 아동 수는 251,000명이며, 2003년에 비해 9% 감소하였다.

기관당 평균 이용 아동 수는 2003년 30명에서 2006년 27명으로 감소하였다.

〈표 5〉 유아교육기관 이용 아동 수

구분	유아학교	유아학급 및 예비학급이 있는 초등학교	유아학급없이 예비학급만 있는 초등학교
2006년도 이용 아동수	36,100	505,900	251,000
2003년도 이용 아동수	35,850	475,400	276,500
이용아동 수 증감 (2003~2006)	+1%	+6%	-9%
정원 증감 (2003 to 2006)	+4%	-3%	-11%
2006년도 평균 이용아동 수	82	78	27
2003년도 평균 이용아동 수	77	76	30
현원 대 정원 비율 (2006)	1.3	1.1	0.9

자료 : 2006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Overview Report(2007)

다. 아동연령별 보육시설 이용 아동 현황

종일제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2세 미만은 20%, 2세는 24%, 3세는

31%, 4세는 21%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기간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2세 미만의 경우는 1%에 불과하나, 2세 17%, 3세 50%, 4세 53%이다.

방과후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 중 88%, 그리고 휴일보육 이용 아동의 83%가 5~14세의 학령기 아동이다.

3. 육아지원인력 현황

가. 규모

2003년 이후, 기간제 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의 보육시설의 유급 및 무급 종사자들의 수는 증가하였다. 종사자 수는 보육시설 수나 기관의 아동 정원보다 빨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일제 보육시설의 경우 28%, 방과후 클럽은 85%, 휴일클럽은 156%로 높게 증가한 반면, 기간제 보육시설 종사자 수는 17% 감소하였다.

〈표 6〉 보육시설 종사자 수

구분	종사자 전체(유급+무급)			전체 종사자 증감 (2003~2006)	정원 증감 (2003~2006)	종사자 증감 (2005~2006)
	2006	2005	2003			
종일제	159,300	148,150	124,200	28%	26%	+8%
아동센터 종일제	10,500	N/A	N/A	N/A	N/A	N/A
기간제	75,100	77,100	90,800	-17%	-14%	-3%
방과후 클럽	54,500	N/A	29,500	85%	58%	N/A
휴일 클럽	68,200	N/A	26,600	156%	117%	N/A

구분	유급종사자			유급종사자 증감	정원 증감	유급종사자 증감
	2006	2005	2003	(2003~2006)	(2003~2006)	(2005~2006)
종일제	143,900	132,650	111,100	30%	26%	+8%
아동센터 종일제	9,370	N/A	N/A	N/A	N/A	N/A
기간제	58,300	59,800	69,600	-16%	-14%	-3%
방과후 클럽	48,500	N/A	25,500	90%	58%	N/A
휴일 클럽	55,500	N/A	21,900	153%	117%	N/A

구분	무급종사자			무급종사자 증감	자리수 증감	무급종사자 증감
	2006	2005	2003	(2003~2006)	(2003~2006)	(2005~2006)
종일제	15,400	15,500	13,000	18%	26%	-1%
아동센터 종일제	1,150	N/A	N/A	N/A	N/A	N/A
기간제	16,800	17,300	21,200	-21%	-14%	-3%
방과후 클럽	6,000	N/A	4,000	50%	58%	N/A
휴일 클럽	12,700	N/A	4,700	170%	117%	N/A

자료 : 2006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Overview Report(2007)

한편 공립학교 내의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유급 및 무급 전체 교직원 수는 감소하였으며, 초등예비학급만 있는 경우는 16%, 초등예비학급과 유아학급이 함께 있는 경우는 8%, 그리고 유아학교의 경우는 6% 감소하였다.

〈표 7〉 유아교직원 수

구분	전체 교직원(유급+무급)		전체 증감	정원 증감
	2006	2003	(2003~2006)	(2003~2006)
유아학교	5,500	5,850	-6%	+4%
유아학급 및 초등예비학급	58,000	62,800	-8%	-3%
초등예비학급(유아학급 없음)	48,300	57,800	-16%	-11%

구분	유급교직원		유급교직원 증감 (2003~2006)	정원 증감 (2003~2006)
	2006	2003		
유아학교	4,600	4,350	+1%	+4%
유아학급 및 초등예비학급	43,000	43,900	-2%	-3%
초등예비학급(유아학급 없음)	31,200	34,300	-9%	-11%

구분	무급 교직원		무급교직원 증감 (2003~2006)	정원 증감 (2003~2006)
	2006	2003		
유아학교	1,200	1,550	-23%	+4%
유아학급 및 초등예비학급	1,200	18,900	-21%	-3%
초등예비학급(유아학급 없음)	17,100	23,600	-18%	-11%

자료 : 2006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Overview Report(2007)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모든 유형의 보육시설에서 관리자급³⁾종사자 비중은 증가한 반면, 여타의 종사자 비중은 감소하였다. 이는 자격이 불충분한 종사자 대신 자격을 소지한 관리자급 인력이 고용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변화로 육아지원인력의 전문성이 향상되었다. 유사하게 유아교육기관에서도 보다 나은 자격의 교직원이 근무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표 8〉 보육시설 종사자 유형별 현황

구분	종일제	아동센터 종일제	기간제	방과후 클럽	휴일 클럽
전체 (유급+무급)	159,300	10,500	75,100	54,500	68,200
	증감 2006 %	증감 2003 2005 %	증감 2006 %	증감 2003 2005 %	증감 2006 2006 %

3) 관리자급(supervisory manager)종사자란 종사자 중 다른 구성원을 감독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학급을 담당하여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의미하며, '책임 관리자(senior managers)'는 기관운영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을 뜻함.

책임 관리자 (Senior mangr.)	9%	+/-0	-1	7%	N/A	11%	-2	-1	13%	-2	9%	-1
관리자급 (Supervisory mangr.)	56%	6	1	58%	N/A	39%	8	2	44%	6	40%	8
유급종사자	27%	-5	+/-0	23%	N/A	27%	-6	-2	32%	-2	32%	-8
실습생	7%	-2	+/-0	8%	N/A	7%	0	+/-0	4%	-2	5%	-1
자원봉사자	3%	-1	-1	3%	N/A	15%	-17	-1	7%	+/-0	13%	2

자료 : 2006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Overview Report(2007)

나. 육아지원인력의 성별, 인종, 장애

보육시설과 유아교육기관의 육아지원인력은 대부분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유아학급과 예비학급(9%)이 있는 초등학교, 휴일클럽(9%) 및 방과후 클럽(16%)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 남성 종사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5세 미만 아동을 담당하는 기관(종일제 및 기간제 보육시설)의 경우 남성 종사자 비율은 1~3%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

흑인 및 소수인종 출신 종사자들의 기관당 평균 비율은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나, 아동센터의 종일제 프로그램(14%)과 휴일클럽(13%), 방과후 클럽(12%)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그러나 기간제 보육시설의 흑인 및 소수인종 출신 종사자의 비율은 5%, 보육사의 경우는 6%로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장애를 가진 육아지원인력의 기관당 평균 비율은 모든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서 약 1%정도로 매우 낮으며, 방과후 보육시설의 경우는 2%이다.

다. 급여 수준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평균 임금은 시간당 7파운드이며, 유아교육 기관 교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시간당 12파운드이다.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모든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금은 영국 평균 임금수준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인상하였으나, 급여 자체는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 종일제 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간당 9.3파운드이다. 이는 두 번째로 급여수준이 높은 휴일클럽과 방과후 클럽 종사자들이 각각 시간당 7.4파운드, 7.2파운드를 지급받은 것에 비하면 2파운드 정도 더 높은 수준이다. 종일제 보육시설과 기간제 보육시설 종사자들은 각각 시간당 평균 6.8파운드, 6.6파운드를 지급받는다.

〈표 9〉 보육종사자 시간당 평균임금

단위: £, %

구분	종일제			아동센터 종일제		기간제			방과후 클럽		휴일 클럽		영국전체 평균	
	증가	증가	증가	증가	증가	증가	증가	증가	증가	증가	증가	증가	증가	
	2006 £	2005 2006	2003 2006	2006 £	2003 2006	2006 £	2005 2006	2003 2006	2006 £	2003 2006	2006 £	2003 2006	2006 £	2003 2006
전체	6,80	6	24	9,30	N/A	6,60	6	22	7,20	22	7,40	19	11,12	15
책임 관리자	9,30	6	9	14,00	N/A	8,00	7	23	9,60	25	10,60	22	N/A	N/A
관리자급 종사자	7,00	8	27	9,80	N/A	6,80	8	21	7,30	24	7,80	18	N/A	N/A
기타 유급 종사자	5,60	6	12	7,00	N/A	5,80	5	21	6,10	15	6,20	15	N/A	N/A

자료 : 2006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Overview Report(2007)

공립학교 내 유아교육기관 교직원의 평균 임금은 모두 유사한 수준이다. 유아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12.3파운드, 유아학급이 있는 초등학교 교직원은 12.5파운드, 유아학급은 없으나 예비학급이 있는 초등학교 교직원은 12.1 파운드를 지급받는다. 유아교육기관 교직원의 급여 수준이 영국 평균 급여수준보다 더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며, 평균 급여의 상승은 교장, 유아교육 조정자(co-ordinator), 자격소지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

(표 10) 유아교사 시간당 평균임금 및 연봉

단위: £

구분	유아학교		유아학급 및 초등예비학급		초등예비학급 (유아학급 없음)		영국 전직종 평균 임금	
	시간당	연봉	시간당	연봉	시간	연봉	시간당	연봉
전체	12,30	21,100	12,50	20,900	12,10	20,300	11,12	23,600
담임교사 또는 유아교육 조정자	19,60	43,400	18,20	33,700	16,00	30,500	N/A	N/A
자격소지 유아교사	17,90	30,400	15,60	26,800	15,00	25,500	N/A	N/A
유아학교 간호원	9,70	16,200	9,50	14,800	8,70	11,800	N/A	N/A
기타 유급 직원	8,10	9,700	7,90	10,000	7,30	8,800	N/A	N/A

자료 : 2006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Overview Report(2007)

라. 자격 기준

육아지원인력의 자격기준은 자격과 교육과정 관리국(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QCA)에 의해 인정되는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8등급으로 구분된다.

- 1급(초급): GCSE 등급 D-G, 초급 GNVQ, 1등급 NVQ
- 2급(중급): GCSE A-C, 중급 GNVQ, 2등급 NVQ
- 3급(고급): A 등급, 고급 GNVQ, 3급 NVQ
- 4급(고급): 높은 수준의 자격, BTEC Higher National, 4급 NVQ
- 5급(고급): 높은 수준의 자격, BTEC Higher National, 5급 NVQ
(유아교육에서 초급)
- 6급(고급): 우등 등급
- 7급(고급): 석사급
- 8급(고급): 박사급

영국 유아교육기관과 ‘기관’ (centre-based) 보육시설 종사자의 70% 이상은 최소한 2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종일제 보육시설 종사자의 86%, 아동센터 종사자의 91%, 전체 보육시설 종사자의 86%가 2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또한 기간제 보육시설 종사자의 76%, 방과후 학교 종사자의 73%, 휴일클럽 종사자의 72%가 적어도 2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사의 경우 대부분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1급 자격 소지자는 52%, 2급 자격소지자는 43%에 불과하다.

종일제 보육시설 종사자와 초등학교 내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의 약 70% 이상은 최소한 3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유아학교와 종일제 아동센터 종사자의 경우에는 80%가 3급 자격소지자이다. 반면 기간제 시설, 방과후 학교, 휴일클럽 종사자들의 3급 자격소지 비율은 각각 58%, 51%, 53%로 낮은 편이다.

8세 미만의 아동 보육에 관한 국가 기준(National Standards for Under Eights Day Care and Childminding: Full Day Care)에 의하면, 종일제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책임 관리자 및 관리자급 종사자는 최소한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해야만 한다. 더불어 모든 보육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아동 보호와 발달을 위해서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경우 6급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종사자 비율은 시설유형별로 10%가 채 되지 않으며, 종일제 아동센터의 경우 여타 유형의 시설에 비해 10% 정도로 비율이 약간 높은 편이다. 한편, 유아교육기관의 경우 6급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교직원 비율은 유아학급없이 초등예비학급이 있는 학교가 45%로 가장 높으며, 유아학급과 초등예비학급이 함께 있는 학교와 유아학교는 각각 38%, 30%이다.

〈표 11〉 유급 육아지원인력 소지 자격

단위: %

구분	종일제 보육		아동센터 종일제		기간제 보육		방과후 클럽		휴일 클럽		보육사		학교내 유아 학교		유아 학급 및 초등예비 학급		초등예비 학급 (유아 학급 없음)			
	증감 2006 %	증감 2005 2006	증감 2006 %																	
1급	1	-1	+0	·	N/A	3	+0	+1	3	+1	4	+2	9	N/A	2	+2	2	+2	1	+1
2급	14	-1	-5	11	N/A	18	+0	+2	22	+4	19	+5	5	N/A	6	-1	6	+1	7	+1
3급	64	+10	+8	62	N/A	51	+3	+12	43	+11	41	+17	33	N/A	45	-3	34	-2	21	-2
4급	4	+0	+8	4	N/A	2	1	+3	2	+5	3	+5	1	N/A	2	+1	3	+0	2	+0

5급	1		3	1		1	1	0	3	2	3									
6급	3	+0	9	3	+0	4	6	2	23	29	35									
7급	*	*	2	1	+0	1	1	1	7	+4	9	+8	10	+9						
8급	*		0	*		*	*	0	*	*	*									
기타	1	-2	+0	1	N/A	1	-2	-3	1	-1	2	-3	5	N/A	2	N/A	1	N/A	2	N/A
모름	2	+1	+0	3	N/A	2	+0	-1	3	-2	4	-5	33	N/A	1	+0	5	+0	7	+5
무자격	10	-6	-10	6	N/A	18	-1	-16	21	-16	19	-21	4	N/A	9	+1	8	-4	11	-9

자료 : 2006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Overview Report(2007)

마. 현직교육

거의 모든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서는 종사자들이 직무연수를 받도록 돕고 있다. <표 III-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직무연수의 내용은 보육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아동안전, 음식 위생에 관한 것이며, 유아교사의 경우는 응급처치와 장애통합으로 조사되었다.

<표 12> 직무연수의 주된 내용 (3가지 복수응답)

구분	단위: %							유아학급에 비학급이 있는 초등학교	예비학급만 있는 초등학교
	종일제 보육	종일제 아동센터	기간제 보육	방과후 클럽	휴일 클럽	유아 학교			
직무연수를 받도록 도움을 받는 육아지원인력	97	98	94	95	95	98	97	94	
응급처치	68	60	62	78	70	30	25	30	
아동안전	42	46	35	49	42	20	12	12	
음식위생	39	44	23	48	49	9	5	N/A	
창의적 놀이	35	44	34	31	32	40	40	41	
장애통합	24	23	27	20	20	23	19	20	

자료 : 2006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Overview Report(2007)

유아학교 종사자의 82%, 종일제 보육시설 종사자의 76%, 특히 종일제 아동센터 종사자들의 85%는 문서화된 직무연수 계획이 있으나, 기간제 보육시설 종사자의 63%, 휴일클럽 종사자의 68%, 방과후 클럽 종사자의 66%는 구체적인 연수 계획이 없는 상태이다. 한편, 유아교육기관 교직원 직무연수의 경우 유아교사를 위한 구체적인 연수가 아닌, 학교기관 중심의 보다 일반적이고 학교전반에 관련된 직무연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종일제 아동센터의 85%, 유아학교의 87%는 직무연수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있으며, 여러 유형의 ECEC 기관 자료를 비교하면 직무연수 계획과 연수예산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현직연수 예산 재원(2가지 복수응답)

구분	종일제 보육	종일제 아동센터	기간제 보육	방과후 클럽	휴일 클럽
학습 & 기술 위원회	15%	27%	8%	11%	14%
기타 정부재원 (EYDCP, 슈어스타트, 지방정부)	85%	99%	84%	74%	72%

주 : EYDCP(Early Years Development and Childcare Partnership): 유아기 발달 및 보육 협력체
자료 : 2006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Overview Report(2007)

바. 임용

종일제 보육시설의 22%, 방과후 클럽의 20%, 휴일클럽의 26%가 거의 유사한 비율로 적극적으로 종사자를 임용하고 있으며, 기간제 시설의 경우에는 약 10%로 상당히 임용율이 낮은 편이다. 유아교육기관에

서 직원을 임용하는 비율은 유아학교의 경우는 26%로 적극적인 편이며, 유아학급과 초등예비학급이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10%, 유아학급없이 초등예비학급이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8%로 낮게 나타났다.

종일제 아동센터의 경우 임용비율이 25%로 가장 높으며, 휴일클럽의 경우는 23%로 나타났다. 기간제 및 종일제 보육시설은 각각 9%, 10%로 가장 낮은 임용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유아교육기관의 교직원 임용비율은 17%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4〉 육아지원인력 임용율, 이직율, 임용증가율

구분	종일제 보육		종일제 아동센터		기간제 보육		방과후 클럽		휴일 클럽		유아학교		유아학급 예비학급 이 있는 초등학교		예비학급 만 있는 초등학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2006 %	2003 - 2006	2006 %	2003 - 2006	2006 %	2003 - 2006										
임용율	22	-9	36	N/A	19	-3	26	-10	46	-10	26	2	22	-2	23	0
이직율	13	-5	11	N/A	10	-4	15	-8	22	-9	8	-3	5	-4	6	-3
임용 증가율	10	-3	25	N/A	9	1	11	-2	23	+/-0	17	4	17	6	17	3

자료 : 2006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Overview Report(2007)

4. 비용

가. 보육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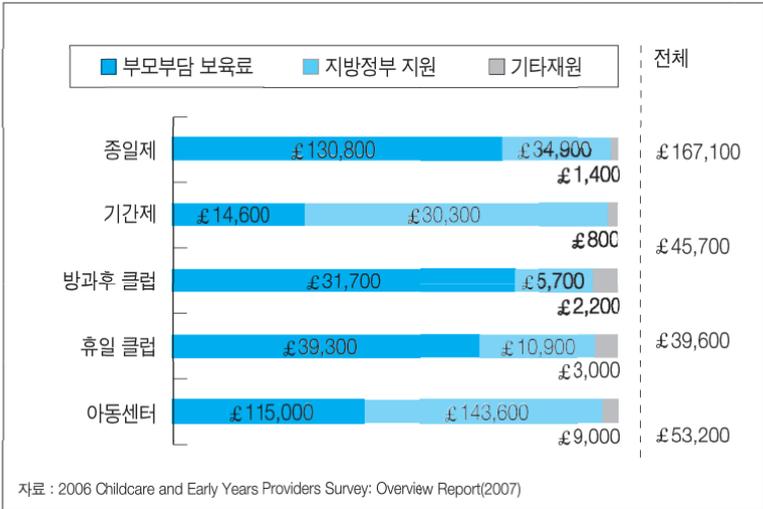
2006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종일제 보육시설은 시간당 평균 2.7파운드로 가장 높은 보육료를 받고 있으며, 휴일 클럽과 기간제 보육시설은 각각 시간당 1.7파운드, 1.9파운드로 가장 낮은 보육료를 받고 있다.

모든 보육시설의 평균 보육료는 70%의 빈곤정도가 가장 덜한 지역(least deprived areas)에서보다 30%의 극빈지역(most deprived areas)에서 일반적으로 더 낮은 편이다. 평균 보육료는 종사자 자격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높은 자격을 소지한 종사자가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고 이로 인해 보육료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는 그다지 신빙성이 없음을 보여준다.

보육사(childminders) 평균 이용료는 인구밀도나 빈곤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당 3.2파운드로 지역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

나. 수입

보육시설의 총 수입 내역은 시설의 유형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종일제 보육시설, 방과후 클럽, 휴일클럽 수입의 대부분은 부모가 지불한 보육료에 의한 것으로, 부모 부담금이 각각 78%, 80%, 74%를 차지한다. 반면, 기간제와 종일제 보육시설의 경우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은 정부 보조금으로, 각각 66%와 54%를 차지한다.



[그림 3] 보육자원 및 부담 비중

2003년 이래로 모든 유형의 보육시설의 재정 사정은 악화된 듯하다. 방과후 클럽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흑자라고 응답한 시설은 비율이 낮은 반면, 적자리는 시설 비율은 높다. 종일제 보육시설은 2003년부터 2006년사이에 수익이 1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05년부터 2006년사이에 수익이 3% 증가한 것으로 보아 시설 수입이 흑자로 돌아서는 시점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간제 시설의 경우는 동일기간 동안 수익이 5% 감소하였다.

■ 요약

이상의 영국 ECEC 현황과 실태를 요약하면, 종일제 보육시설과 방과후 시설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 종사자와 이용 아동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육사 수는 안정적인 반면, 기간제 보육시설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유아교육기관 수는 안정적이거나, 아동 정원 수는 감소하고 있다. 교직원 수는 아동 정원 수의 감소 비율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교직원 수가 실질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편, 보육시설의 관리자급 종사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여타의 유급종사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자격수준이 높은 교직원 비율이 증대하고 있으며, 모든 ECEC 기관에서 최소한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육아지원인력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보육시설은 2003년에 비해 2006년 수입, 즉 이윤이 감소하였다. 방과후 학교 클럽을 제외하면, 적자가 심각하여 문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의 주요 육아 정책과 연구

영국의 육아정책은 최근 5년간 실로 많은 변화와 개혁을 거듭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국의 최근 주요 육아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2003년도에 천명된 Every Child Matters를 비롯하여 2007년 10월에 발표된 Children's Plan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개혁안과 둘째, 서비스 통합을 위한 슈어스타트 아동센터(Children's Centre)와 슈어스타트 프로그램 평가, 연장제 학교 서비스(Extended school services), 셋째,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표준청(Ofsted)의 강화된 평가체제와 2007년 개발되어 2008년 9월부터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기초단계 교육과정(Early Years Foundation Stage), 넷째, 가족 및 부모지원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영국의 육아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EPPE 프로젝트의 주요 결과와 정책적 기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을 위한 개혁방안: Every Child Matters

영국 정부는 Every Child Matters(Green paper, 2003)야말로 0~19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하여 유럽에 현존하는 정책 중 가장 야심찬 통합개혁안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이 개혁안은 빅토리아 클립비에라는 어린이가 정부 녹서인 아동학대로 비극적으로 사망한 후 2003년에 발표되었다. Every Child Matters(모든 아동은 소중하다)는 기존의 영국 육아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효과적인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 아동빈곤, 부실한 아동보육과 유아교육, 열악한 학교제도와 건강서비스에의 접근기회의 부족 등과 같이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에 대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슈어스타트를 통하여 개발된 예방접근방법들을 통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요하는 아동 수를 감소시켜야 한다. 아동에 대한 지원은 생애주기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영유아기 및 청소년기와 같은 결정적 시기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서비스는 성별 및 인종에 따른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부모교육과 가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아동과 가족과의 관계에 보다 관심을 두고 이를 지원 해야 하며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아동이 부모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경우, 아동을 돌보는 사람과의 안정적이고 애정어린 관계가 형성,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셋째,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 생애 초기에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이 필요하다. 추가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학대와 무관심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잠재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정책적 혁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빅토리아 클림비에 보고서 (Victoria Climbié Inquiry Report)와 기타 관련연구에서 지적된 다음의 두 가지 주요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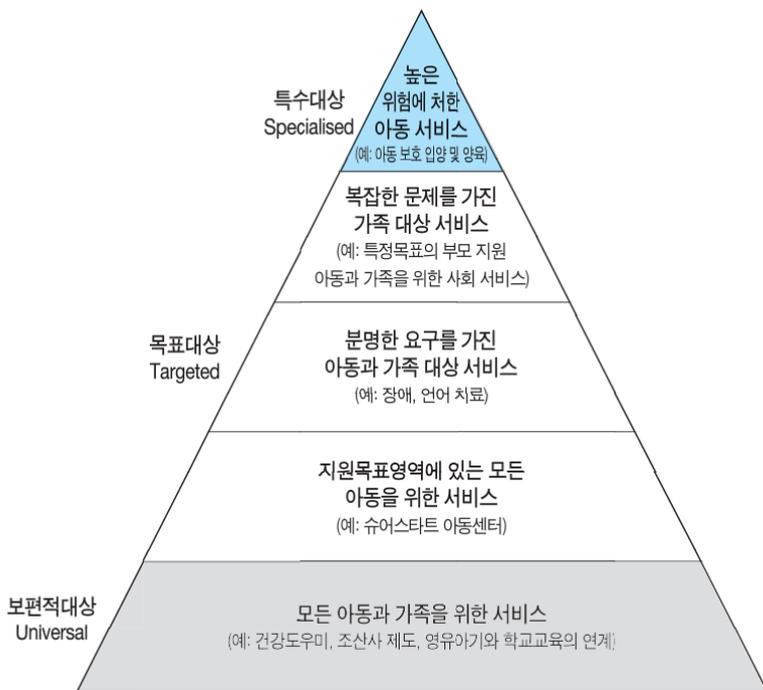
■ 책무성과 통합성의 부족

특수한 요구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 시스템은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고 책무성이 불명확하다. 이는 유관기관간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관련 유의사항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일부 아동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를 몇 번씩 경험하게 된다. 또한 아동에게 다양한 전문적 진단이나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지원의 지속성이나 일관성은 부족한 실정이다. 여러 관련기관들은 지원문제가 기관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아동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열은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중앙정부의 혼선에 의하여 종종 발생된다.

■ 육아지원인력 전문성 제고의 필요

아동을 돌보는 직업이 보다 매력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며, 육

아지원 기술과 전문적 관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담당하는 육아지원인력은 자신의 업무가 평가절하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사업 영역에서 지원인력 문제는 가장 심각하여, 전국적으로 11%의 결원율이 나타나고 있다(런던 자치구들에서는 40~50%정도임). 일부 관계자들은 아동발달, 아동보육, 가정폭력 등에 대한 정규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이고, 현장 종사자들은 정신건강과 특수교육 등에 대한 아동의 요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림 4]는 지원 대상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4] 지원 대상에 따른 육아지원 서비스

자료 : HM Government(2003), Every Child Matters, p21.

무엇보다도 Every Child Matters는 아동과 관련된 주요 중앙정부 부처들의 파트너십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파트너십은 지방정부의 보건, 교육, 아동 서비스 부서 간에도 동일하게 요구되었다. 2008년부터 영국 전 지역에 아동기급 위원회(Children's Trusts)가 설치될 예정이며, 모든 아동이 성취해야 할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교육적 성과, 즉 공동목표가 설정되었다.

[모든 아동을 위한 5가지 목표]

- 건강(Being healthy)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건강해야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불법적인 약물을 섭취해서는 안된다.
- 안전(Staying safe)
아동은 학대, 방임, 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해야하고, 사고나 죽음으로부터 안전해야한다. 또한 따돌림이나 차별로부터 안전하며, 학교 및 기타 기관 안팎의 범죄나 반사회적 행동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 즐거움과 성취(Enjoying and Achieving)
아동은 취학을 준비하고 학교생활에 즐겁게 참여하며, 각 단계의 학교에서 교육적 표준에 도달하고 사회성 발달을 이루며 여가를 즐겨야한다.
- 긍정적인 기여(Making a positive contribution)
아동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환경을 지원하며, 준법정신이 있어야 한다.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감을 기르며 삶의 중요한 변화와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진취적인 행동을 발달시켜야한다.

- 경제적인 안정(Achieving economic well-being)
지속적으로 교육받으며, 적절한 주택과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대중
교통이나 생활필수품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다섯 가지 목표는 모든 영국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보편적’ 희망이다. 이와 더불어 영국정부는 빈곤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사회적 격차를 축소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또한 특수아들의 발달적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하였다.

Every Children Matters 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해 아동법(Child Act, 2004)과 아동보육법(Childcare Act, 2006)이 개정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육아지원인력의 질적 제고를 통해 사회의 가장 어린 구성원인 영유아에게도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과 동등한 위치에서 누려야 할 법적 권한과 지위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법을 통해 아동과 부모의 요구를 최우선시함으로써 중앙정부는 육아 서비스 계획과 전달체계 하에서 지방정부들과 함께 아동보육시장을 형성하고 지원하여 질 높은 보육에 대한 일하는 부모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아동보육법(Childcare Act, 2006)에 의해 지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첫째, 접근 기회가 높은 통합된 형태의 유아기 서비스를 통하여 5세 이하의 모든 영유아들의 발달적 성과를 향상시키며, 빈곤소외집단의 격차를 축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

둘째, 지역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에 초점을 둔 만족스런 아동보육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

셋째, 부모들이 육아관련 정보 이용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확대된 의무를 부과한다.

넷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조정체계를 개혁하고 단순화하여 서비스 체계의 관료주의를 지양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5세 이하 아동의 학습과 발달을 위한 새로운 단일 교육과정인 영유아기 기초단계(Early Years Foundation Stage)를 구성하여 높은 서비스 기준을 유지하고 아동의 발달적 성과를 촉진한다.

2006년도에 수립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플랜’(Children and Young People's Plan: CYPP)은 모든 지역 아동을 위한 공통의 단일한 전략을 제시하며, 아동의 성과를 위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CYPP는 Every Child Matters의 핵심 내용인 아동의 성과 향상을 단계별로 추구하고, 이를 위해 지방정부에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여 지역의 협력 도모와 아동의 성과 및 형평성 향상에 주력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Every Child Matters 프로젝트의 일부인 ‘육아지원인력전략’(Children's Workforce Strategy)은 아동과 청소년, 가족들과의 효율적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 아동의 안전과 복지 향상, 발달적 전이에 대한 지원, 다양한 기관들의 지원과 정보공유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2. 10개년 아동보육 전략 실행계획

20 06년 4월 10개년 아동보육전략 실행계획(Ten Year Childcare Action Plan)인 **부모를 위한 선택, 아동을 위한 최상의 출발 실현하기**(Choice for Parents, the Best Start for Children: Making it Happen)는 모든 아동이 생애 초기에 최상의 출발을 하도록 보장하고 부모의 선택 기회를 증진하여 가정과 직장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이행된 아동보육 전략의 성과와 도전과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누가,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실행계획의 핵심주제는 선택과 유연성(Choice and Flexibility), 이용가능성(Availability), 질(Quality), 비용지불 가능성(Affordability)으로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선택과 유연성(Choice and Flexibility)

부모에게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보다 많은 선택 기회를 부여함.

- 2010년까지 12개월 유급 출산휴가를 목표로 하며, 그 첫 단계로 예산계획 보고서(Pre-Budget Report)에서 2007년 4월부터 9개월 연장계획을 공표함.
- 또한 2010년까지 어머니에게 할당된 유급 출산휴가를 아버지에게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 모든 가족이 지역사회의 아동센터를 통하여 통합된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고하고 부모와 아동을 위한 정보, 건강, 가족지원, 아동보육,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공표함. 이를 위해 2008년까지 2,500개, 2010년까지 3,500개의 아동센터가 설립 될 예정임.

나. 이용가능성(Availability)

0~14세 아동과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비용부담 가능하고 유연한 양질의 보육시설을 지원함.

- 3~4세 아동을 대상으로, 38주 동안 질 높은 무상보육을 주당 20시간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함. 예산계획보고서에 공고한 바에 따라 2010년까지는 모든 연령의 아동에게 연간 38주 주당 15시간의 무상보육을 제공할 예정임.
- 2010년까지 주중 오전 8시에서 6시까지 3세~14세 연령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다. 질(Quality)

최고로 숙련된 육아지원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질 높은 육아환경을 제공함.

- 모든 종일제 보육시설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담당하도록 함.
- 2006년 4월 까지 매년 1억2천5백만 파운드의 전환기금(Transformation Fund)을 마련하여, 질 높고 지불가능한 육아지원 시설에 투자하기로 공표함.
- 2005년에 영국정부는 육아지원인력의 자격기준과 경력에 관한

자문기관인 **육아지원인력개발회의(Children's Workforce Development Council)**와 함께 육아지원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함.

- 기관의 질적 기준을 제고하고 보다 나은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규정과 평가체제를 개혁함.

라. 비용지불 가능성(Affordability)

가족의 요구에 적합한 유연하고 질 높은 아동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예산계획보고서에 2005년 4월부터 근로세금공제항목의 범위 내에서 주당 300파운드(아동 1인당 175파운드)로 증액하고 2006년 4월부터는 보육료 상한제의 범위내에서 70%에서 80%로 향상하기로 공표함.
- 두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연간 3만 4천 파운드의 보육비용을 지원함. 이러한 개혁은 85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보육료 절감 효과를 나타내어 부모가 연간 7백 파운드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임. 정부의 야심찬 장기계획은 보육료에 대한 부모부담을 경감하여 보육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또한 예산계획보고서에 2006년 4월부터 런던 지역당국과 함께 시범작업 비용으로 5백만 파운드를 책정하여 런던의 아동보육 비용부담 관련 이슈를 다룰 것을 공표함.

이상과 같이, 정부의 비전은 모든 아동이 생애초기부터 최상의 출

발을 하고, 부모들에게 일과 가정생활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2010년까지 모든 3~4세 아이들은 1년에 38주, 1주일에 15시간 동안 양질의 무상 보육을 제공받게 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모든 3세~14세 아동이 매주말 오전 8시에서 오후6시까지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50,000명 부모의 자녀에게 무상 보육을 제공한다는 최근의 발표처럼 아동보육 문제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패키지가 수반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뒷받침하고 아동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육아지원인력의 근본적인 재편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육아지원인력의 위상을 제고하고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도록 보육시설 종사자를 위한 훈련기회를 증대할 것이다. 또한 2006년 4월에서 2008년 8월까지 2억 5천만 파운드의 전환기금(Transformation Fund)은 부모 부담 비용을 경감하려는 노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육아지원인력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3. 슈어스타트 아동센터 (Children's Centre)와 지역 프로그램

가. 슈어스타트 아동센터 개요

영국정부는 전국에 슈어스타트 아동센터를 설립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아동센터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각 지역사회

의 거점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동센터는 종일보육시설과 결합된 질높은 유아기 학습, 학습발달을 돕는 질높은 교사, 아동과 가족의 건강 서비스, 부모들을 위한 복지, 가족지원 서비스, 보육사 네트워크를 위한 기반,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동과 부모를 위한 지원, 훈련과 고용을 원하는 부모와 보육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센터와의 효율적인 연계를 목적으로 한다.

2004년 소비 보고서(Spending Review)는 2008년까지 극빈지역 아동과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2,500개의 아동센터 설립을 발표하였다. 10개년 아동보육전략에서는 2010년까지 설립될 3,500개의 센터를 통해 5세 이하 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통합 서비스 및 정보제공, 다학제적 전문가팀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2006년도 이전에는 거의 80%의 아동센터가 극빈지역에 설립되었으나, 2006년과 2008년 사이에는 여전히 극빈지역에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일반지역에도 설립될 예정이다.

거의 대부분(96%)의 아동센터는 용이하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2%의 아동센터는 보육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28%는 다른 조직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또한 95%의 아동센터가 부모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5%는 센터에서 직접 제공하며 나머지 30%는 아동센터 및 다른 기관과의 연계하여 제공한다.

아동센터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부모 및 돌보는 사람을 위한 문해, 언어, 수와 같은 기초 지식과 기술이며(88%), 학습장애를 포함하여 장애아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88%), 한부모(86%)와 십대부모 지원 프로그램(84%)이다.

대부분의 아동센터는 초기 슈어스타드 재원으로 개발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50%의 아동센터가 지방정부에 의해, 또는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 기부단체(20%)와 사립부문(17%)과 같은 기존의 다른 ECEC 기관들이 아동센터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다. 2006년도 기준으로 61%의 아동센터는 운영기간이 2년이하이다. 아동센터의 평균 운영기간은 연간 50주이며 80%는 50주 이상을 운영한다.

슈어스타트 아동센터의 역할은 다음단계로 구성된 발전 모델에 제시되어 있다.

- 1단계: 아동센터의 전략(Children's centre strategy)
 - 아동과 청소년 계획(Children's and Young People's Plan)과의 조화
 - 보육 수요에의 부응
 - 도시와 농촌, 극빈 지역 및 일반지역, 단설 및 대학부설 아동센터, 학교 및 연장제 서비스와의 연계, 신설 또는 기존 기관에 설립

- 2단계: 외부와의 협력을 통한 기관유지
 - 아동센터 운영을 위하여 외부공급자에 대한 적극적 고려
 - 학교 및 기타 기관과의 서비스 운영에 대한 합의

- 3단계: 행정, 관리 및 종사자 전문성 제고
 - 지방정부와의 전략적 운영, 효과적인 리더십, 전문가간의 협력, 종사자 구조 및 인건비, 자격기준을 갖춘 종사자 임용

나.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 평가⁴⁾

1) 슈어스타트 프로그램 평가 영역 및 주요 결과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기초하여 영국 내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 중재프로그램의 목적은 0~4세 아동의 발달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다. 2006년까지 영국에는 총 823개의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150개의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각 프로그램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가 척도는 18가지 영역을 7가지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18가지 영역은 크게 다음의 3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 관점: 목표, 의사소통, 기본정신, 추진력 등
- 운영 과정: 협력 기능, 리더십, 운영, 전문가 서비스의 경로, 종사자의 이직률, 평가 등
- 서비스 제공과 계획의 유능성: 핵심프로그램, 접근용이성, 혁신성, 융통성 등

18가지 영역에 걸쳐서 높게 평가받은 프로그램은 부모교육 효과를 보이는 등 아동 및 부모의 성취와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DIES(2005), Variations in Sure Start local programme effectiveness: Early preliminary findings: The national evaluation of Sure Start를 토대로 작성됨.

- 부모에게 초점을 두는 서비스가 많을수록 부모가 부정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확률이 낮음. 부모 임파워먼트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자녀를 때리거나 꾸중하지 않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녀에게 보다 자극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함.
- 프로그램이 전제하는 기본정신이 확고할수록 부모가 수용적인 태도를 나타냄.
- 아동에 초점을 두는 서비스가 많을수록 부모의 수용적인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출산 도우미나 가정방문 보건원이 많을수록 부모가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임.

2) 효과적인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의 특징

영국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 16개를 분석해 본 결과, 지역 프로그램은 해당지역의 인구사회적인 배경이나 종교 등과 같은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규모나 복잡성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며, 그 주요 특징으로 부모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와 다원적 팀워크(Multi-agency team work)를 들 수 있다.

가) 임파워먼트(Empowerment)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은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취한

것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자원봉사나 교육, 취업을 통해서 또는 운영위원회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확고한 원리·원칙을 전제로 하여 실제 운영이 이루어지며, 종사자와 자원봉사자간의 균형을 이루고, 개인적인 일과 협력적인 일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종사자를 위한 전략이 있으며, 성취한 것에 대한 토의와 평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계획과 의사결정에 다수의 관계자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제공자와 이용자에게 동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원리는 전문가, 가정, 부모 및 아동의 역할에 의미를 두는 것이다. 특히, 부모가 자신의 역할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때에 아동의 발달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다원적 팀워크(Multi-agency team work)

프로그램을 협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요구되지만 전통적인 역할과 책임의 변화를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새로운 슈어스타트 사무실에는 다른 영역의 담당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프로그램 운영자는 서로 다른 담당자들 간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인식하고, 이를 직면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과 교육, 자원을 제공하여 지원한다.

3) 효과적인 슈어스타트 지방 프로그램을 위한 운영 지침

원활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슈어스타트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

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역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우선적 사안에 적합하도록 지역적 요구를 경청함.
- 신속하게 전문가의 요구를 규명하고 목표를 설정함.
- 숙련된 종사자의 배치와 훈련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시점에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사자를 융통성 있게 채용함.
- 서로 다른 담당자들 간의 협력적인 팀워크를 위해 적합한 훈련과 조정이 필요함.
- 프로그램 운영자는 예산 및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프로그램의 운영자는 종사자 관리, 예산 운영, 서로 다른 담당자들 간의 조정, 지역사회와의 의사소통 등에 대한 기술이 요구된다. 프로그램의 종사자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는 것에 적응하여야 한다. 요컨대,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자체평가를 통한 총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 공급자들은 지역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춰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들은 환영받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한 장소,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부모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받으며, 자녀가 안전한 장소에서 또래와 어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여긴다. 특히 장

애이나 부가적인 교육적 요구를 가진 유아를 가진 부모들은 더욱 그러하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들은 슈어스타트 센터 종사자들의 자질 및 자녀양육과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서적인 지원 등을 중요시 여긴다.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의 가장 큰 이유는 자신감의 부족 때문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 사적인 가족문제 공개에 대한 우려, 센터를 여성을 위한 장소로 인식하는 일부 아버지 등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부모가 야간근무 또는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하며 소수민족 집단에서는 언어적 문제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참여하기 어렵다.

성공적인 슈어스타트 아동센터는 실제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일부 프로그램 운영자는 익숙한 서비스 운영 방식을 바꾸기 원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잠재적인 수요자들을 고려하여 보다 수요자 친화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각 분야별로 협조해야 한다. 또한 자체평가와 전략 수립을 통해 얻게 되는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지속적인 훈련이 요구된다.

4. 연장제 학교 서비스 (Extended School Services)

가. 도입 배경

영국 전역의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장제 서비스는 보육 이외의

아동을 위한 여타 활동, 성인대상 교육, 양육지원, 보건·사회시설 이용과 같이 학교에서 아동과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종종 정규 교육시간 이후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정부는 모든 학교가 2010년까지 연장제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며, 2008년까지는 초등학교의 절반과 중학교의 1/3이 연장제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 연중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유아에게 보육 또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함.
- 부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함.
-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결해 줌.
- 학교 편의시설을 지역사회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각 학교는 독자적으로, 또는 인근의 학교와 협력하여 연장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연장제 서비스는 주로 학교에서 제공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장소에서도 제공될 수 있음.

나. 연장제 학교 서비스의 주요 성과⁵⁾

1) 초등학교의 연장서비스

대부분의 초등학교는(87%)는 정규수업시간 이후에 아동에게 방과 후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의 63%는 방과후 활동을 오후

5) DfES(2005), Extended Services in Schools: Baseline Survey of Maintained Schools in 2005를 토대로 작성됨.

5시 이전에 종료하며, 방과 후 활동을 제공하는 초등학교의 절반은 주5일 이하로 운영되고 있다. 방과후 활동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아동에게 체육, 미술, 음악이나 ICT와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38%의 학교만이 숙제나 학교에서의 학습을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초등학교의 40%가 정규수업 이전시간에 아동을 위한 활동이나 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의 75%가 오전 8시 이전에 시작하며, 89%가 주5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정규수업시간 이전에 활동이나 보육을 제공하는 학교의 44%는 숙제나 학교에서의 학습을 보충하며, 55%가 체육, 미술, 음악이나 ICT와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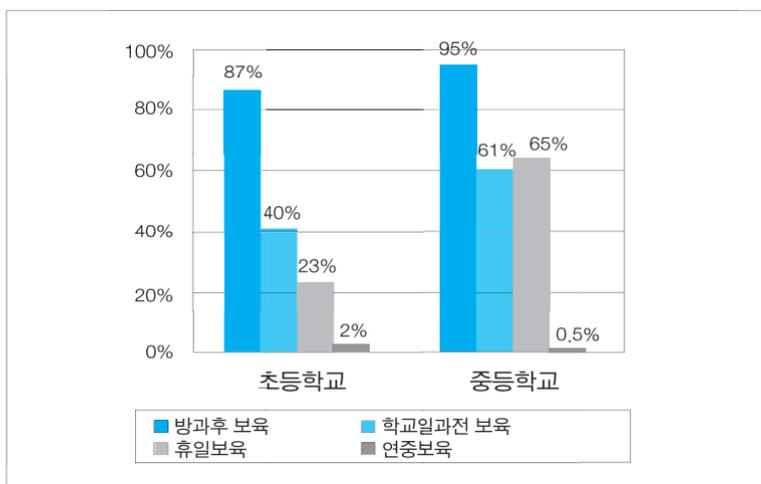
휴일에 보육이나 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덜 일반적이다. 23%의 초등학교가 휴일에 아동을 위한 활동이나 보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35%는 오전 8시 이전에 시작하고, 33%는 오후 6시 이후에 마친다. 휴일에 활동을 제공하는 초등학교의 91%가 체육, 미술, 음악의 활동을 하며, 23%가 숙제와 학교공부를 보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핵심지원에 따라 주5일,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학령기 아동에게 활동과 보육을 제공하는 초등학교는 전체의 12%이며, 3%의 학교만이 모든 휴일에도 운영되고 있다. 영국 초등학교의 2%(430개)만이 정부의 핵심지원에 구체화되어 있는 수준으로 연중 보육과 여타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2) 중등학교의 연장서비스

대부분의 중등학교에서는 방과후에 이동을 위한 정기적인 활동과 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들의 90%가 숙제와 학교공부를 보충하는 시간을 운영하며, 또한 99%의 학교에서 체육, 미술, 음악, ICT와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과 후 활동을 제공하는 중학교의 55%가 오후 5시 이전에 끝나며, 28%의 학교는 6시 이후까지 운영하고, 60%의 학교가 주 5일로 운영한다.

61%의 중등학교에서 학교 수업 전에 정기적인 활동과 보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72%가 8시 이전에 시작하고 88%가 주 5일로 운영되며, 97%가 일 년에 3학기로 운영된다. 65%의 중등학교가 휴일에도 활동과 보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93%가 체육, 미술, 음악과 ICT 수업을 운영하고, 대부분 휴일활동을 제한된 시간으로 제공한다.



[그림 5] 연장제 학교서비스 운영비율

60%의 중등학교가 학령기 아동에게 수업 전·후의 활동을 제공하고 있지만, 단지 10%의 학교만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3학기로 운영하고 있다. 1%의 중등학교(34개)만이 휴일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로 운영하고 있다.

3) 학교시설개방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편의시설(교실을 비롯한 공간, 체육관시설, 컴퓨터실과 멀티미디어실, 미술실과 도서관 등)을 학교 외부 사람들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즉, 75%의 초등학교와 97%의 중등학교, 62%의 유아학교, 74%의 특수학교들이 한가지 이상의 편의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4) 가족학습

부모 또는 아동의 양육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학습의 기회는 67%의 유아학교가 제공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는 39%, 중등학교는 31%, 특수학교는 24%가 가족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가족학습과 마찬가지로 부모를 위한 자녀 양육지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5) 학습이외의 아동 지원

학습이외의 학생에 대한 지원은 양호교사, 언어치료사, 건강 관리자, 심리학자, 복지사, 경찰, 음주와 마약 또는 성과 관련된 건강 전문가 등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학습이외에 열거된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5. 영유아기 기초단계 교육과정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가. 개발 배경 및 개요

영국은 1999년 영유아기 학습목표(Early Learning Goals)를 설정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 Key Stage 1,2 이전에 처음으로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단계(Foundation Stage)를 포함하게 되었다. 그 후 수년 동안의 기초단계 교육과정과 표준개발 발전을 토대로, 그리고 10개년 아동보육전략인 부모를 위한 선택과 아동을 위한 최상의 출발(Choice for Parents, the Best Start for the Children, 2004)과 2006년 아동보육법(Childcare Act)에 근거하여 영국은 2007년에 대상아동을 0~5세로 확대하는 영유아기 기초단계 교육과정(Early Years Foundation Stage: EYFS)을 개발하였다. EYFS는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8세 미만 아동을 위한 기관보육 및 가정보육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s for Under 8s Daycare and Childminding), 0~3세 아동을 위한 교육과정(Birth to Three Matters), 그리고 3~5세 아동을 위한 기초단계(Foundation Stage) 교육과정, 이 세 교육·보육과정을 대체한다.

EYFS는 이 세 교육·보육과정의 원리, 철학, 접근법상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모든 만5세 이하 아동이 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자격과 교육과정 관리국(QCA)에 의해 개발되었다. EYFS는 1년 동안 현장에서 시험적으로 시행·검토된 후, 2008년 9월부터 교육표준청(Ofsted)에 등록된 모든 ECEC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나. EYFS의 목적

EYFS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아동이 Every Child Matters에서 설정한 안전(Staying safe), 건강(being healthy), 즐거움과 성취(Enjoying and Achieving), 긍정적인 기여(making a positive contribution), 경제적인 안정(Achieving economic well-being)의 다섯 가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측면에 주안점을 둔다.

[EYFS의 주안점]

- 모든 아동이 진보할 수 있도록 가정이외의 기관에서 아동의 학습과 발달, 보호를 위한 **표준 설정하기**(setting the standards).
- 모든 아동이 인종, 문화, 종교, 언어, 가족배경, 학습장애, 성별, 능력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사회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 제공하기**(providing for equality of opportunity).
- 부모와 전문가간, 아동이 다니는 모든 기관간의 **파트너십을 위한 구조 창출하기**(creating the framework for partnership working).
- 기존의 교육과 보육의 분리를 종식하고 규정과 관리감독의 근거를 제공하도록 모든 ECEC 기관에 적용되는 보편적 표준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과 일관성 제고하기**(improving quality and consistency).
- 개별 아동의 요구와 흥미에 기초한 학습과 발달을 통하여, 또한 지속적인 관찰평가를 토대로 **장래의 학습을 위한 안정된 기반 마련하기**(laying a secure foundation for future learning).

다. EYFS의 기본원리

EYFS의 기본원리는 네 가지의 다른 상호보완적인 주제로 범주화할 수 있으며, 영국의 효과적인 ECEC 실체는 이에 기초한다. 교사를 위한 교육과정 안내지침서인 *EYFS Principles into Practices*는 이러한 원리들을 어떻게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지, 즉, 교사가 어떻게 아동의 발달과 학습, 보호를 지원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각각의 주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중점 실천항목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 아동의 고유성(A Unique Child)

모든 아동이 태어날 때부터 유능한 학습자임을 인식함(발달, 사회적 통합, 안전, 건강과 복지를 중심으로).

■ 긍정적 관계(Positive Relationships)

아동이 부모 및 주요한 주변사람들과의 온정적이며 안전한 관계로부터 어떻게 강인하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지를 배우는 가에 대해 설명함(존중, 부모와의 파트너십, 학습 지원, 주요 핵심인물의 역할에 초점).

■ 학습 촉진 환경(Enabling Environment)

환경이 아동의 발달과 학습을 지원하고 확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함(관찰, 평가와 계획, 개별아동에 대한 지원, 사회적 배경-전이, 연속성, 여러 기관간의 협력에 초점).

■ 학습과 발달(Learning and Development)

아동이 다양한 방식과 속도로 학습하고 발달하며 모든 영역의 학습과 발달이 동등하게 중요하며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함.

라. EYFS의 구성요소와 영역

아동보육법(Childcare Act, 2006)에 근거하여 EYFS는 학습목표, 교육프로그램, 평가계획의 세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 학습목표: 아동이 만5세가 되는 학년말에 습득해야 하는 지식, 기술, 이해
- 교육프로그램: 아동이 배워야 하는 내용, 기술, 과정
- 평가계획: 아동의 특정한 성취를 평가하기 위한 계획과 준비

또한 EYFS는 다음과 같은 6개의 학습과 발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1999년도의 기초단계 교육과정 영역과 유사하며, 의사소통, 문제해결, 추론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 개인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 (Personal,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 의사소통, 언어와 문해 (Communication, Language and Literacy)
- 문제해결, 추론과 수 (Problem Solving, Reasoning and Numeracy)

-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World)
- 신체적 발달 (Physical Development)
- 창의적 발달 (Creative Development)

교원자격과 교육과정 관리국(QCA)은 *Practice Guidance for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를 개발하여 6개 교육과정 영역별 학습 목표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아동이 이러한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과 평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마. EYFS의 아동평가⁶⁾

EYFS의 평가는 기초단계동안에 이루어지는 ‘형성평가’와 만5세가 되는 기초단계말의 ‘총괄평가’로 구분하고 있다. 기초단계동안에 이루어지는 형성평가는 교사의 관찰에 의한 지속적인 평가를 강조한다. 교사는 아동의 일상적 활동을 다양한 교수학습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며, 또한 부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습득한 아동에 대한 정보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Practice Guidance for EYFS*의 ‘관찰하고 경청하고 기록하기’(Look, Listen and Note) 부분에서는 교사가 개별아동의 성취와 흥미, 학습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과 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각 아동의 학습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유관하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경험을 계획하도록 명시

6) EYFS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는 다음 절의 교육표준청(Ofsted)의 질 관리 평가체제 부분 참조

하고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교사 관찰이 학습목표의 기대수준에 상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사의 객관적인 관찰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과 지원은 각 기관의 책무이다.

기초단계말의 총괄평가는 기초단계 프로파일(EYFS Profile)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각 아동의 발달수준은 학습목표(Early learning goals)에서 도출된 13개 세부영역별 평가척도⁷⁾에 따라 기록되며, 아동의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한 관찰을 토대로 평가된다. 각 기관은 아동이 만5세가 되는 해의 6월30일 이전에 담당교사가 반드시 총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할 책무가 있다. 또한 부모에게 아동발달 평가결과와 프로파일(EYFS Profile)의 사본(부모 요청시) 및 평가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지방정부는 최종적으로 평가결과를 아동학교가 족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각 기관이 아동평가와 EYFS Profile 작성을 위하여 모든 기관이 훈련받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교사 단독으로 총괄평가를 하여 EYFS Profile을 작성하지 않도록 조정자(moderator)가 정기적으로 각 기관을 방문하여 조언하게 하는 책무가 있다.

7) EYFS 6개 영역을 세분화한 13개 영역별로 각 9점 척도를 사용함. 상세한 내용은 Statutory Framework for the EYFS 부록1 Assessment Scales에 제시되어 있음(www.teachernet.gov.uk/publications).

6. 교육표준청(Ofsted)의 질 관리체제

영국에서는 유아기 서비스 조정과 평가를 교육표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Ofsted)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육표준청(Ofsted)은 1992년 학교평가를 위해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립되어 학교평가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해 왔다. 2001년에 지방정부들이 서로 다르게 사용하던 기존의 유아기 서비스 평가기준은 8세 미만 아동을 위한 국가수준 평가기준에 따라 재조정되었으며, 조정과 평가의 책임은 지방정부에서 표준교육청으로 위임되었다. 이에 모든 ECEC 기관은 정기적으로 유아의 성과에 대한 서비스의 기여, 서비스의 질, 개별적 유아의 요구에 대한 서비스의 부응 정도에 대해서 교육표준청(Ofsted)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교육표준청(Ofsted)은 ECEC 기관이 적합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은 물론, 부모들에게 기관의 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평가기준은 2006년 아동보육법(Childcare Act)에 근거하여 새로 개발된 영유아기 기초단계(Early Years Foundation Stage) 교육과정의 목표로 대체되었고, 교육표준청(Ofsted)은 2008년 9월부터 등록된 모든 기관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것을 평가할 예정이다.

영국에서 아동을 위한 서비스는 두 가지 평가 과정을 통해서 관리된다. 첫째는 각 지방의 아동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연간수행평가(Annual Performance Assessment: APA)이며, 둘째는 지역협력평가

(Joint Area Review: JAR)이다. 지역협력평가는 연간수행평가보다 더 심도 있게 이루어지며, 지역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안전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 두 가지 평가 모두 육아지원 서비스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함께 협력해 나가야하는지를 제시한다. 연간수행평가는 2005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지역협력평가는 2005년과 2008년 사이에 영국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연간수행평가와 지역협력평가는 아동 서비스의 평가체제(Framework for Inspection of Children's Services)에 따라 실시된다.

가. 평가 체제

1) 평가의 목적

영국의 ECEC 서비스 평가의 목적은 '아동의 발달 향상'에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평가가 이루어진다.

- 아동의 성취와 경험에 초점을 맞춤.
-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서비스가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고, 학습에 어려움이나 장애, 또는 낮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로 인해서 성취가 낮은 아동도 포함.
- 엄격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종사자들의 객관적인 평가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능력을 평가함.
- 아동발달을 증진하기 위해서 기관이 해야 할 일을 알림.
-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을 통지함.

2) 평가 과정

ECEC 기관평가는 상황과 요구에 맞추어서 이행되며 평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과정에 집중해야 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표 15〉). 평가자는 적절한 수준에서 대상기관에 관련 문서와 자체평가를 포함한 자료를 요구하며,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공정하게 결과를 보고한다. 특히, 평가자는 아동과 학부모의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여 평가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표 15〉 교육표준청의 평가과정

평가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표준청에서 대상기관에 평가일정을 알린다.• 평가 대상기관은 관련서류를 교육표준청에 보낸다.• 교육표준청에서는 관련서류를 바탕으로 기관에 적합한 평가팀을 구성한다.
방문평가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단이 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증거 자료를 수집한다.
평가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평가를 마친 평가단은 각 평가자의 평가에 근거하여 대상기관의 수준을 논의하고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최종보고서는 공개이전에 기관에 보내져서 내용이 보안된다.

나. 평가영역 및 수준

1) 아동수행성과에 대한 기관 평가영역 및 평가요소

ECEC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영국 정부의 Every Child Matters의 다섯 가지 목표(성과)에 근거해 각 목표영역에서 기관이 아동에게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건강(Being healthy)
- 안전(Staying safe)
- 즐거움과 성취(Enjoying and Achieving)
- 긍정적인 기여(Making a positive contribution)
- 경제적인 안정(Achieving economic well-being)

〈표 16〉에는 평가영역별 목표, 즉, 유아의 발달과 안정을 위해서 기관이 가정이나 타 기관과 협력하여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평가의 주요 기준이 된다. 각 영역의 모든 목표가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 하나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평가는 적합하고 실제로 가능한 측면에 국한하여 이루어진다.

〈표 16〉 영국 ECEC 기관 평가영역 및 평가요소

평가영역	건강(Being Healthy)
목표	신체적 건강/ 정서적 건강/ 성적 건강/ 건강한 생활양식
주요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자는 아동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받아야 한다. - 건강한 생활양식은 아동에 의해 증진된다. - 아동의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아동의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아동의 건강을 보살필 필요성이 언급된다. - 학습 장애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동의 건강유지의 필요성이 언급된다.

평가영역	안전(Staying Safe)
목표	폭력과 성적 착취, 학대로부터의 안전/ 사고로 인한 부상과 죽음으로부터 안전/ 차별이나 따돌림으로부터의 안전/ 범죄와 반사회적 행동으로부터의 안전/ 안정적인 보호
주요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과 주 양육자에게 위험한 상황과 대처방법을 알려준다. - 아동은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 - 학대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 최근 정부의 기준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한다. - 아동이 있는 곳을 확인하고 제공하는데 효과적이어야 한다. - 아동은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에서 생활해야 한다. - 학습 장애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동은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

평가영역	즐거움과 성취(Enjoying and Achieving)
목표	취학을 위한 준비/ 기관활동에 즐겁게 참여 사회성 발달과 여가의 활용
주요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에게 아동의 즐거움과 성취를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아동 초기의 지원은 유아의 발달과 안녕을 증진시킨다. -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아동이 즐거움과 성취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기관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도 교육은 제공되어야 한다. - 모든 아동은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아동이 즐거움과 성취를 경험하도록 돕는다. - 학습 장애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동이 즐거움과 성취를 경험하도록 돕는다.

평가영역	긍정적인 기여(Making a positive contribution)
목표	의사결정에의 참여/ 준법/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자신감/ 진취적인 행동
주요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사회적·정서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 아동이 삶의 변화와 도전에 대해 잘 대처하도록 돕는다. - 아동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를 지원하도록 격려한다. -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킨다. - 학습 장애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동이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평가영역	경제적 안정(Achieving economic well-being)
목표	교육의 기회/ 직업준비/ 적합한 거주지/ 교통수단과 물품의 이용/ 가정의 소득수준
주요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지원한다. - 지역사회의 세대교체에서 아동의 역할을 알린다. - 아동이 적합한 주거지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 - 아동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돕는다. - 학습 장애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동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돕는다.

2) 기관평가 국가기준

이상의 다섯 가지 주요 영역에 있어서 아동의 수행성과에 대한 기관의 기여정도 뿐만 아니라, ECEC 기관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국가기준은 ECEC 기관의 유형에 따라 세부내용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나,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14가지의 영역을 포함한다.

〈표 17〉 기관에 대한 국가평가기준

1. 적합한 자격 (Suitable person)	유아교육과 보육기관의 종사자는 담당업무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운영 (Organization)	유아교육과 보육기관은 성인 대 아동의 비율, 필요한 공간 및 자원, 종사자의 자격 등을 준수해야 한다.
3. 학습과 보호 (Care, learning and play)	아동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하며, 아동의 신체·정서·사회·인지적 능력향상을 위한 활동과 놀이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물리적 환경 (Physical environment)	기관은 목적에 맞게 안전하고 안정되어야 하며, 충분한 공간과 아동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갖추어야 한다.

5. 설비 (Equipment)	가구나 놀잇감, 교재 교구는 아동의 발달에 적합 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6. 안전 (Safety)	실내·외의 환경을 안전하게 구성하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7. 건강 (Health)	유아 교육과 보육기관에서는 아동의 건강을 증진 시키고, 감염된 질병에 대해서, 또한 질병의 전염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8. 급간식 (Food and drink)	아동에게 정기적이고 적절한 양의 급간식을 제공해야 한다. 급간식은 영양과 아동의 입맛에 맞게 조리되어야하며 지역적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9. 동등한 기회 (Equalopportunities)	유아 교육과 보육기관의 종사자는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10. 특수한 요구 (Special educational needs & disabilities)	특수한 요구를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이러한 과정은 부모나 다른 기관 과의 연계를 통해서 아동의 발달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1. 행동 (Behaviour)	아동의 발달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아동의 다양한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 져야 한다.
12. 가정과의 연계 (Working in partnership with parents and carers)	기관과 가정은 서로 정보를 나누고, 아동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
13. 아동안전 (Child protection)	지역의 아동보호위원회(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에서 승인하는 아동안전을 위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4. 문서화 (Documentation)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아동의 학습과 보호를 위해서 문서, 규정, 과정은 모두 보존되어야 한다. 개별아동에 대한 기록은 부모와 공유한다.

특히 기관의 서비스 질과 운영에 대한 평가는 다음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 아동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수행목표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을 모색한다.
- 동료와 협력하여 정보를 나누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훈련시키고 지원한다.
- 불법적인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비용에 합당하는 충분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관은 자체 서비스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요컨대, 영국의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에 대한 평가는 아동에게 중요한 다섯 가지 수행성과에 대해서 기관이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따라 정해지며, 이 다섯 가지 영역은 다른 나라의 평가영역에 비하여 훨씬 광범위하여 아동의 발달에 기여하는 기관의 포괄적인 특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평가 정보와 평가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영국에서 기관 평가는 일반 학부모들에게 생소한 개념이 아니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학부모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7. 가족 및 부모 지원 프로그램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은 4세 이하의 아동과 그 가족에게 유아교육과 보육, 특정지역에서의 가족과 의료, 건강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

회적 통합을 위한 정부정책의 중요한 요소이다.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의 가족 지원은 가정환경과 양육이 아동의 성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으며, 부모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처해 있는 불리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59개의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에서는 649개의 가족 및 부모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개별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이 각각 평균 11개의 가족 및 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부모지원프로그램 관련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녀양육 중재프로그램은 출산 이전부터 일찍 시작될수록, 또한 영·유아기까지 지속될 경우, 아동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의 자녀양육 중재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부모의 자녀양육지원(Parenting support)과 가족지원(Family support)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 18) 가족 및 부모지원 프로그램의 유형

<p>자녀양육지원 (Parenting Suppor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부모의 자녀양육 기술 향상 - 부모의 양육기술과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향상 시키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통찰력, 행동, 태도 및 자신감 등을 향상 시키기 위한 형식적이고 비형식적인 모든 중재를 포함.
<p>가족 지원 (Family Suppor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감소 - 전형적인 가족지원서비스는 부모 자신의 자아 존중감과 자신감을 증진하고 사회적 관계 및 지원,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함.

가. 가족 및 부모지원 프로그램의 유형 및 특성

1) 부모 양육지원 프로그램 유형

가) 자녀양육 프로그램(Parenting program)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부모자녀 관계를 향상시키고, 부모 태도 및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실제 운영되고 있는 비율이 비교적 낮고 부모 참여율도 낮은 편이어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에서 운영되는 양육프로그램의 뚜렷한 형식은 아직 발견하기 어렵다.

나) 가정방문 프로그램(Home visiting program)

가정방문 프로그램은 대부분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가정방문은 집중적인 일대일 중재나 실증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양육프로그램의 전달이 아니다. 한편, 가정방문교사는 가정방문과 관련된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다.

다) 임신부 프로그램(Prenatal program)

임산부 대상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건강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전통적인 양육기술, 태교, 출산준비,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지원, 베이비 마사지 등에 초점을 맞춘다. 일부 혁신적인 프로그램에서는 부모가 되기 위한 정서적인 준비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며, 부모와 유아간의 안정적인 애착형성과 유대감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

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전문가 교육이 요구된다.

라) 초기학습 프로그램(Early learning program)

초기학습 프로그램은 표준화된 중재를 목적으로 하나, 대부분이 지역별로 개발되어 일반적으로 합의된 특정한 형식은 없다. 표준화된 중재프로그램으로는 PEEP, Early Start, Share, High Scope, Story Sacks 등이 있다.

이상의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첫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훈련을 받는 전문가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양육방식에 대한 격려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셋째, 가족에 대한 특정한 개입을 포함하며, 부모 양육방식의 변화를 위한 특정 방법을 사용한다. 넷째, 개입이 이루어지는 동안 특정한 과제와 세부적인 목표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목적에 접근해야 한다. 다섯째, 이론에 근거하며 프로그램 지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2) 가족 지원프로그램의 유형

가) 치료 서비스(Therapeutic service)

치료서비스는 다양한 범위의 상담을 포함하며, 대부분이 개인의 변화를 중재하는 폭넓은 시행 방법을 기본으로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인지행동치료, 가족치료, 예술치료 등이다.

나) 성인학습 프로그램(Adult learning program)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과 같이 합의된 내용의 교육과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시행되는 프로그램 중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다) 일반적 지원(General support)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은 부모와 가족의 안녕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지원으로, 여가나 다양한 활동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비공식적인 형태이다. 일반적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한부모 가정, 10대 부모 등과 같은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며, 슈어스타트 종사자나 자원봉사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반적 지원은 단순히 부모의 자녀양육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나. 효과적인 부모·가족 지원프로그램의 특성

■ 부모-자녀 관계에 초점 맞추기

임신초기부터 걸음마기와 그 이후까지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의 모든 활동은 부모 자녀 관계에 초점을 둔다.

■ 종사자-부모 간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

종사자-부모 관계는 바람직한 관계의 모델이 되며,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가족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사자는 기술 및 경험 뿐 아니라 공동의 목표에 도달하려는 의지를 함께 한다.

■ 이론적인 모델의 사용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은 부모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명료한 이론적 모델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 표준화되고 검증된 프로그램의 공급

일부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은 표준화되고 검증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부모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 임신 초기부터 시작되는 능동적인 지원

임신 초기부터 시작되는 지원은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게 한다. 일부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은 집단 형태의 활동을 통해 부모와 협력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하였다. 부모와 태아의 관계를 강조하는 임신부 집단, 부모와 태아의 의사소통을 돕고 사회적 존재로서 간주하는 구조화된 집단, 초기 학습이나 창의적인 행동에 중점을 둔 부모와 영아자녀 집단 등이 있다.

■ 프로그램 참여 부모 모집 및 참여부모에 대한 태도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은 광고, 전단지, 소식지, 홍보 등을 통해서 부모참여 프로그램이나 가족참여 활동에 참가할 부모를 모집한다. 참가자 모집은 계획수립에 도움이 되며, 프로그램 종사자는 혼자 참

여하는 부모를 격려하거나 동반자가 되어주는 등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도 한다.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모든 부모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종종 사회서비스부(Social Service Department) 등을 통해서 소개된 부모들도 대상으로 한다. 부모들에게 선택기회를 제공하며, 강요하지 않고 비판적이지 않은 종사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부모가 집단의 일부로서 자신의 경험을 비슷한 환경의 다른 부모들과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부모지원의 성패를 좌우한다.

■ 접근용이성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여유롭고, 형식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소수민족집단의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되며 통·번역 장치나 문화적 배려가 필요하다.

■ 종사자 교육

종사자는 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교육받는다. 또한 종사자는 프로그램 운영관련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이를 통해 동료 간의 유대가 형성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영국에서 가족과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모에게 확연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프

로그램은 충분하지 않다. 가족 및 부모 지원을 위한 구조화되고 검증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협력과 종사자 교육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영국의 부모지원은 매우 다양한 가족과 아동 지원 서비스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8. 정책연구: EPPE Project

ECEC 서비스 질 제고 전략은 국가 수준의 연구와 발달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어 지역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 수행된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EPPE(The Effective Provision of Pre-school Education) 프로젝트는 영국의 육아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EPPE 프로젝트는 3세에서 7세까지의 아동의 지적, 사회적 발달을 조사하기 위한 유럽 최초의 대규모 종단연구이다. 취학전 교육(3,4세 아동 대상 유아학교)이 3세에서 7세의 아동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기 위하여 3세에 모집된 3000명의 아동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Key Stage 1(6,7세: 초등학교 1,2학년)이 될 때까지 종단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아동의 발달수준, 부모와 관련 배경, 가정의 교육환경, 유아가 다닌 기관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연구대상기관은 설립유형에 따라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립보육시설(Local authority day nurseries), 통합기관(Integrated centres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놀이그룹(Playgroups), 사립보

육시설(Private day nurseries), 공립학교 내의 유아학교(Nursery schools), 유아학급(Nursery classes)의 총 여섯 유형을 포함하였다. 또한 육아지원기관에 다닌 경험이 없거나 최소인 아동과 비교하였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연구를 통해서 효과적인 기관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 EPPE의 연구문제와 조사대상

EPPE 프로젝트는 다음의 연구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첫째, ECEC 서비스는 아동의 지적, 사회적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둘째, 아동의 발달을 증진함에 있어 더 효과적인 ECEC 기관의 특성은 무엇인가?

셋째, 가정과 기관에서의 경험은 아동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ECEC 서비스의 효과는 Key Stage 1(6세~7세)까지 지속되는가?

EPPE 프로젝트의 조사대상이 된 ECEC 기관은 총 141개로 그 유형 및 수는 <표 19>에 제시되어 있다.

〈표 19〉 EPPE 연구 조사대상 기관 수 및 아동 수

ECEC 기관 유형	기관 수	아동 수
지방정부 (공립)보육시설 (Local Authority Daycare)	24	430
사립보육시설(Private Day Nurseries)	31	520
유아학교(Nursery Schools)	20	520
유아학급(Nursery Classes)	25	590
통합기관(Integrated Center)	7	190
놀이집단(Playground)	34	610
가정(기관 미이용아동)	-	310

나. EPPE의 주요 연구결과

1) 아동의 발달과 ECEC 기관의 경험

가) ECEC 기관 미이용 아동과의 발달 비교

- ECEC 기관에 다닌 아동의 경험은 전 영역에서의 발달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ECEC 기관에 다닌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는 시점(만5세)에서 인지적 성과와 사회성, 집중력이 높았다.

나) ECEC 기관 이용 기간과 이용 시작 시점에 따른 효과

- ECEC 기관 이용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을 연구한 결과, ECEC 기관에 다닌 기간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과 2학년울 마친 시점에서 아동의 인지적 성장과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 또한 2세와 3세 사이에 일찍 기관에 다니기 시작한 아동이 더

나은 인지적 성장과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나타냈다. 아동이 조기에 ECEC 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한 효과는 초등학교 2학년을 마칠 때(Key Stage 1)까지 지속되었다.

- 2세미만에 ECEC 기관에 다니기 시작할 경우, 3세와 5세가 되었을 때 행동문제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 종일반에 다니는 것이 반일반에 다니는 것에 비해 발달에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었다.

다) 다양한 아동배경과 요구에 따른 효과

- ECEC 기관의 경험은 불리한 배경을 가진 아동에게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의 아동이 ECEC 기관을 처음 다닐 때는 학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학교 입학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아동이 1/5로 감소하였다. 이는 ECEC 기관이 특수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아동집단에게 효과적인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ECEC 기관에서 읽기와 같은 특수한 지원은 불리한 배경을 가지거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아동에게 도움이 된다. 불리한 배경을 가진 아동은 만3세와 학교입학시 사회적으로 부적합한 발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아동의 불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ECEC 경험은 아동이 학교에서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즉 양질의 ECEC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입증한다.

- 여아가 남아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발달이 빠르고, 특히 협력이나 자립심, 집중력에 있어서 남아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여아는 남아에 비해 인지적 성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ECEC 기관의 질과 유형에 따른 아동발달 효과

가) 기관의 질

양질의 ECEC 기관은 아동의 높은 인지·사회적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양질의 ECEC 기관에 다닌 아동은 독립심이 강하고 반사회적 행동이 적으며 학교에서 문제행동이 적다.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은 특별히 중요한데, 교사가 아동의 개별적인 요구에 반응적이고 온정적인 기관을 다닌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더 높은 발달 수준을 보였다.

나) 교사의 전문성

ECEC 기관의 질은 아동 성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교사의 자격수준과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잘 훈련된 교사가 ECEC 기관에서 아동과 함께 생활하며 교육과정을 지도할 경우 ECEC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며, 이는 특히 아동이 만5세가 될 때 사회성 발달 및 읽기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균형있는 교육과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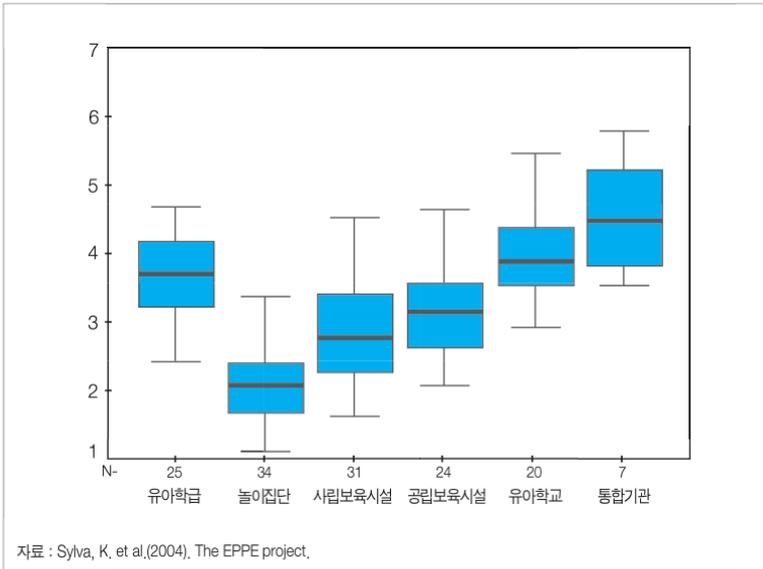
ECEC 기관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 중 하나는 기혼단계 교육과정의

4가지 발달적 영역을 측정한다. 읽고 쓰기, 수학, 과학, 다양성(성별, 문화, 개별적 흥미와 능력)을 강조하는 ECEC 기관은 아동의 인지적 성취를 촉진시키며, 특히 6세 때의 읽기와 수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CEC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과과정은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할수록 동시에 사회·정서적 측면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ECEC 기관 유형

아동의 배경과 사전의 지식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ECEC 기관 유형은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과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통합기관과 훈련된 교사의 비율이 높은 유아학교가 아동의 인지적 성장에 더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통합기관과 유아학교는 아동의 사회적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PPE가 총 141개의 ECEC기관을 ECERS(Early Childhood Environment Rating Scale)(Sylva, Siraj-Blatchford, & Taggart, 2003) 척도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통합기관과 유아학교가 질적으로 우수한 반면 놀이집단과 사립보육시설 및 공립보육시설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 ECEC 기관 유형에 따른 서비스의 질

- Caregiver Interaction Scale(CIS)(Arnett, 1989)을 통해서 시설 유형별로 교사-아동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긍정적인 관계 (positive relationships) 항목에서 통합기관, 유아학급, 유아학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놀이집단과 공립보육시설은 분리(detachment)와 허용(permissiveness)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교사-아동간의 상호작용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놀이집단과 사립보육시설에서는 반일제 종사자 채용비율이 다른 유형의 기관에 비해 높았으며, 반일제 종사자의 경우 종일제 종사자보다 전문성 개발의 기회가 적으므로 서비스 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 모든 조사대상 기관이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놀이 집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설이 자원봉사자 없이도 교사 대 아동비율의 법적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 가장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가진 종사자는 공립보육시설에 근무하며 급여수준도 가장 높았다. 학사이상의 학위를 요하는 자격을 소지한 관리자급 인력은 유아학교나 유아학급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 통합기관이 해당되며, 놀이집단의 경우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국공립기관은 활동을 계획할 때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더 많이 참고하는 반면, 놀이집단은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기관에 비해 국공립기관에서 아동의 발달을 더 자주 관찰,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른 유형의 시설에 비해 국공립기관이 부모와 정보를 공유하고 부모교육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효과적인 ECEC 기관의 특성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12기관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규명한 효과적인 ECEC 기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아동-성인간의 언어적인 상호작용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유되는 사고(Sustained shared thinking)가 존재하며, 이는 문제해결, 개념 확립, 활동평가 등을 위해 인지적 방법을 사용할 때 나

타났다. 또한 효과적인 기관의 교사는 개방형 질문을 하고 아동에게 피드백을 더 잘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활동의 주도성

효과적인 ECEC 기관에서는 활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교사와 아동이 균형있게 담당하며, 이는 아동의 학습을 촉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된다.

다)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

교육과정 및 아동의 학습에 대한 교사의 지식은 이후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단계만큼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이라고 밝혀진 대부분의 ECEC 기관에서는 놀이 환경을 이용하며 직접적인 지도와 동시에 잠재적인 교육적 효과가 있는 자유선택 놀이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법은 사회적 발달 뿐만 아니라 학습적인 목적도 함께 추구한다. 아울러 효과적인 기관의 교사는 아동에게 언어나 수학과 같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라) 부모 참여

아동의 학습에 부모가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의 아동은 인지적 성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효과적인 기관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교사와 부모가 공유하고, 부모는 유아의 학습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 이는 가정에서 부모가 아동에게

기관에서의 학습을 보충하고 완성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바람직한 훈육

효과적인 기관에서는 아동이 준수해야 규칙과 행동지침이 있으며, 아동이 기관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교사가 독려하였다. 반면, 덜 효과적인 기관에서는 다수의 경우 아동의 실수나 그릇된 행동에 대한 설명 없이 단지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정의 교육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EPPE 연구에서 가정의 교육환경을 측정해본 결과,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파악하게 되었다. 동화책 읽어주기,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글자와 숫자를 이용하여 놀이하기, 도서관 가기, 아동에게 알파벳과 숫자 가르치기, 가정에서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등 가정에서의 이러한 안정적인 활동은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아동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가정의 교육환경은 부모의 교육수준 및 직업보다 아동의 성장과 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무엇을 하는가’는 ‘부모가 누구인가’보다 중요하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어머니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자녀가 학교입학시 더 나은 출발을 하도록 도울 수 있

다. EPPE 연구는 다양한 환경들 중에서 특히 가정에서 하는 활동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 EPPE 연구의 정책적 기여

EPPE 연구는 양질의 ECEC 기관이 아동의 인지적·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3, 4세 시기의 기관을 경험한 효과가 6, 7세 까지 지속되는 것을 밝혔다. 이는 ECEC 기관이 불리한 환경에서 양육되는 아동의 발달을 통합적으로 이끌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ECEC 기관이 가정의 영향을 넘어서 아동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하며, ECEC 기관에 다닌 경험뿐만 아니라 그 질적 측면 역시 중요함을 나타낸다.

EPPE 연구 결과는 영국 정부의 ECEC 정책에 다음과 같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EPPE 연구의 정책적 영향]

- 유아학교의 지속
정부는 유아학교를 폐쇄하고 보다 저렴한 형태의 ECEC기관에 재정 지출을 고려해 왔으나 그대로 지속하기로 함.
- 모든 3~4세 유아 대상 무상서비스 제공(2004)
현재 모든 3~4세 유아들이 1주 15시간 38주 동안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2008년부터 1주 20시간 38주로 확대할 예정임.
- 10개년 아동보육 전략수립(2004)
교육기술부는 EPPE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10개년 전략을 수립함.

- 아동 센터(Child's Center)에 관한 지침(2005)
정부는 EPPE를 인용하여 아동센터에 관한 지침을 마련함.
- 아동보육법(Childcare Act, 2006)
교육기술부는 새로운 보육법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EPPE를 인용함.
- 출산 휴가 연장(2010)
자녀 출생 후 12개월까지 출산 휴가 기간을 연장할 예정임.
- 영국 정부는 ECEC에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투자효과가 매우 높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게 됨.

이와 같이 EPPE 연구는 실제에 근거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며, 전문가의 연구수행이나 ECEC 기관의 실제 운영, 부모의 자녀양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EPPE 연구는 ECEC 서비스의 효과가 Key Stage 1(6, 7세) 이후에도 지속되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현재에도 수행되고 있다.

맺음말

최 근 영국에서는 ECEC 서비스의 확대와 질적 제고에 전례 없는 관심과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ECEC 서비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기반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막대한 재정 지원과 정책 개혁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괄목할 변화는 불과 10년내에, 특히 2003년 Every Child Matters 정부개혁안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영국정부는 2000년대 초반에 OECD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주제검토 사업(Thematic Review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ies) 검토단이 향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제시한 권고안의 상당부분을 이미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영국 육아정책의 혁신적 발전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은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 육아정책의 핵심은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국정부의 의지와 일관된 노력으로 축약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정부는 교육기술부 산하에 범부처조직인 슈어스타트국(Sure Start Unit)을 조직하여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재무부, 통산상업부 등과의 긴밀히 협력하여 각종 아동 서비스와 교육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 왔다. 슈어스타트국은 2007년 출범한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of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에 그 대로 남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영국정부는 아동과 가족과 관련된 모든 부처를 연계하고 총괄하는 조직을 발족함으로써 육아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부처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과 조정 역시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과 관리감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동보육법(Childcare Act, 2006)에 근거해 지방정부는 아동과 가족을 위한 새로운 책무를 부과받아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육아정책을 시행하되, 중앙정부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행정체제의 협력과 통합뿐만 아니라 영국 전 지역에 이미 800여개 이상의 슈어스타트 아동센터를 통하여 교육과 보육, 건강, 복지, 가족지원, 장애아 지원, 부모와 종사자 직업훈련, 상담, 정보제공,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과 가족이 다양한 요구를 한 곳에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연장제 학교 서비스는 육아지원기관과 초중등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아동에게 보다 일관성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통합적이고 포

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 편의시설의 개방, 가족학습과 자녀양육지원과정 등을 운영함으로써 학교일과 전후의 보육서비스 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지원을 동시에 하고 있다. 연장제 학교서비스는 수적으로 부족한 아동센터를 상당 부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정부의 통합적 서비스에 대한 의지는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에도 구현되어 있다. 기존의 3~5세 아동을 위한 기초단계(Foundation Stage) 교육과정과 0~3세 아동을 위한 Birth to Three Matters, 그리고 8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국가표준(National Standards for Under 8s Daycare and Childminding)을 통합하여 0~5세 아동을 위한 Early Years Foundation Stage를 개발하였다. 또한 기존의 지방정부에서 담당하여 상이한 평가기준을 단일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인 교육표준청에서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영국의 육아정책은 Every Child Matters에서 설정한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 목표를 향하여 단 한 명의 아동도 뒤처지거나 낙오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미 모든 3~4세 아동에게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2세 아동을 포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0년까지는 막대한 재정투자로 연간 38주, 주당 20시간의 무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아직 만5세 아동의 무상서비스 제공을 달성하지 못한 우리나라 실정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동시에 영국정부는 빈곤아동과 장애아동 등과 같이 특수한 요구가

있는 아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국제적인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기본적인 방침안에서 대상에 따라 세분하여 맞춤형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체계적인 정책수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은 방대한 연구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육아선진국가 중의 하나이다. EPPE 프로젝트는 연구가 육아정책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매2년마다 육아지원서비스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화추이를 분석하는 연구체제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수많은 육아정책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정책현안 해결을 위한 단기 연구에 치중된 경향이 있으므로 보다 장기적 시간을 요하는 근본적인 정책적 이슈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육아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을 확충하며, 육아지원인력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등, 오늘날 영국의 육아정책의 발전은 국가 지도자들의 영유아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개혁의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Every Child Matters(2003)와 Children's Plan(2007)과 같은 정부 개혁안에는 영국정부가 얼마나 모든 아동을 소중히 여기고 최상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강한 책임감이 피력되어 있다. 아동이 있는 모든 정부는 영국정부처럼 단순히 육아지원서비스의 제공자가 아닌 ‘아동과 부모의 옹호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Barlow, J., Kirkpatrick, S., Wood, D., Ball, M., & Stewart-Brown S. (2007) Family and parenting support in Sure Start local programmes, <http://www.surestart.gov.uk/>
- Cohen, B., Moss, P., Petrie, P., & Wallace, J. (2004). *A new deal for children? : Reforming education and care in England, Scotland and Sweden*. Bristol, UK: Policy Press.
- DfES(2005). Variations in Sure Start local programme effectiveness: Early preliminary findings: The national evaluation of Sure Start.
- DfES(2005). Extended Services in Schools: Baseline Survey of Maintained Schools in 2005.
- DfED(2006). Children Act 2004. <http://www.dfes.gov.uk/publications/childrenactreport/>
- DCSF(2007). Statutory Framework for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http://www.teachernet.gov.uk/publications>
- DCSF(2007). Children's Plan: Building brighter futures. London: TSO.
- HM Government(2003). Every Child Matters, Green paper, London: Iso.
- HM Treasury, DfES, DWP, DTI, (2004). Choices for parents, the best start for children: A ten year strategy for childcare. Norwich: HMSO.
- HM Government(2006). Every Child Matters: Changes for Children, London: TSO.
- Nicholson, S., Jordan, E., & Kinnaird, R. (2006). 2006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s: Overview report. DCSF & BMRB Social Research.

OECD(2006). Starting Strong II. Paris, France: OECD.

OECD(2001). Country Note on the United Kingdom, Paris, France: OECD.

Sure Start Unit(2005). A Sure Start Children' Centre for every community: Phase 2 planning guidance(2005-2006).
<http://www.surestart.gov.uk>

Sylva, K., Melhuish, E., Sammons, P., Siraj-Blatchford, I., & Taggart, B. (2004). The effective provision of pre-school education [EPPE] project; DfES. UK. <http://www.ioe.ac.uk/projects/eppe>

<http://www.everychildmatters.gov.uk>

<http://www.hm-treasury.gov.uk>

<http://surestart.gov.uk>

문무경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미국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유아교육전공(석·박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현,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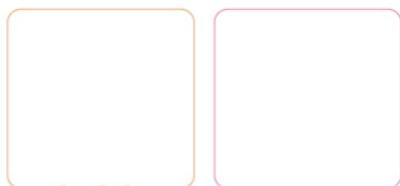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4

영국의 육아정책

발행인 • 이옥
발행처 • 육아정책개발센터
편역 • 문무경
발행일 • 2007년 12월
주소 •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11층
<http://www.kicce.re.kr>
대표전화 • 02) 730-7070
팩스 • 02) 730-3313
인쇄 •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대)

ISBN 978-89-92396-22-6 93330

정가: 6,000원



Child Care

Education



Polic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10-734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11층
Tel. 02-730-7070 Fax. 02-730-3313



9 788992 396226 9 3 3 3 0
ISBN 978-89-92396-22-6